

2008 년 9 월 30 일

시설 공학

화재 예방 및 방화 (防火) 프로그램

*본 팜플렛은 2003 년 11 월 7 일판 미 8 군 팜플렛 420-1 을 대체함.

사령관을 대신하여:

LEWIS F. SETLIFF III
대령, 일반참모
참모장

공무:



GARRIE BARNES
출판 및 기록 관리처장

요약. 본 팜플렛은 한국시설관리본부 소방 및 긴급 업무수행 프로그램 수립을 목적으로 삼는다. 미 육군성 (DA) 은 모든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주둔지 사령관, 시설/건물 관리자 및 감독관들은 직원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초기교육 실시와 함께 그들의 화재예방 계획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화재의 원인 요소를 제거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 인가된 화재 예방법에 의거하여 (IAW)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재 예방 검열 프로그램.

b. 화재의 위험성 및 원인, 예방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증진시키도록 고안된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화재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변경 사항 요약. 본 문서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 내용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적용. 미육군 캠프 케이시 경비대 및 미육군 캠프 레드 클라우드 경비대, 미육군 용산주둔지 경비대, 미육군 캠프 험프리즈 경비대, 미육군 대구 경비대의 주둔지 사령관들은 한국시설관리본부 및 화재 예방 및 방화 (防火) 지휘, 관외 위성 시설, 기타 시설 공병 지원이 제공되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 본 팜플렛의 조항들은 시설관리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및 계약업체, 구내 매점과 그 직원 및 부서, 그리고 막사, 건물 및 기타 시설관리본부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기관에 적용된다.

보충. 시설 관리 사령부 소방 및 긴급 업무과 (부대번호 15742, 우편업무번호 303, 사서함 51 (OPS), 군우 96205-5742) 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 팜플렛에 대한 예하부대 사령부의 자의적인 보충은 금지된다.

양식. 주한 미 육군 양식은 http://8tharmy.korea.army.mil/g1_ag/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록 관리. 본 규정에 서술된 절차의 결과로서 생성된 기록은 육군규정 25-400-2 에 따라 식별, 관리, 처분된다. 기록명 및 설명은 군 기록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인 <https://www.arims.army.mil>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권고 사항. 본 팜플렛의 담당자는 한국시설관리본부 소방 및 긴급 업무과이다. 사용자는 본 팜플렛에 대한 조언 및 개선 사항을 미 국방성 양식 2028 (출판 및 기입 서식 권고) 으로 시설 관리 사령부 소방 및 긴급 업무과 (부대번호 15742, 우편업무번호 303, 사서함 51 (OPS), 군우 96205-5742) 에 제출할 수 있다.

분배. 전재 매체 한정 (EMO).

목차

제 1 장

서론, 5 쪽

- 1-1. 목적
- 1-2. 관련근거
- 1-3. 약어 해설
- 1-4. 총론

제 2 장

일반적인 화재 예방 수칙, 7 쪽

- 2-1. 인명 안전
- 2-2. 건축 및 개조, 현대화
- 2-3. 소화기
- 2-4. 흡연 통제
- 2-5. 개방된 불, 용접, 절단 및 낫 땀질 작업
- 2-6. 주거 관리
- 2-7. 난방 장치
- 2-8. 조리 기구
- 2-9. 인화성/가연성 액체 연료
- 2-10. 위험 화학물 및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 2-11. 도색
- 2-12. 아스팔트 및 타르 탄광
- 2-13. 압축 가스 실린더
- 2-14. 전기배선 설비 및 장치, 기구
- 2-15. 차량 주차 및 보관품
- 2-16. 소화전
- 2-17. 총론

제 3 장

특수활동을 위한 화재 예방 조치, 21 쪽

- 3-1. 항공기 작업
- 3-2. 공공 시설
- 3-3. 숙사
- 3-4. 공휴일 및 특별 행사
- 3-5. 물자 적재
- 3-6. 계약업체 및 구내매점업자를 위한 화재 예방 조치
- 3-7. 기동훈련 및 야전훈련

별지, 32 쪽

- A. 관련근거
- B. 기관/부서의 화재 계획 지침

목차 (계속)

- C. 기관/부서 화재 예방 사령부 검열 프로그램 점검표
- D. 기관/부서 일반 화재 예방 검사 항목
- E. 방화 상 천막 설치 간격
- F. 주한미군 소방대/화재 신고 전화번호
- G. 사격장 및 삼림 화재 예방 및 보호
- H. 용접, 절단 및 늦 땀질 작업 점검표

도표 목차

- 도표 E-1. 정예 소방대 존재시 8 피트 간격의 소형 천막 배치, 47 쪽
- 도표 E-2. 정예 소방대 부재시 8 피트 간격의 소형 천막 배치, 48 쪽

용어집, 59 쪽

제 1 장 서론

1-1. 목적

본 팜플렛은 한국시설관리본부 소방 및 긴급 업무수행 프로그램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미육군성 (DA) 은 모든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주둔지 사령관, 시설/건물 관리자 및 감독관들은 직원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초기교육 실시와 함께 그들의 화재예방 계획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인가된 화재 예방법에 의거하여 (IAW), 화재의 원인 요소를 제거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안전한 방식으로 행하기 위한 화재 예방 검열 프로그램.

b. 화재의 위험성 및 원인, 예방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증진시키도록 고안된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화재 예방 교육 프로그램.

1-2. 관련근거

필요한 문서 및 관련 서적은 별지 A 에 열거되어 있다.

1-3. 약어 해설

본 팜플렛에 사용된 약어는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다.

1-4. 총론

a. 화재 예방 및 소방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책임 및 절차는 주한 미육군 팜플렛 420-1 에 수록되어 있다. 사령관은 책임 하에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시설/건물 관리자를 서면으로 임명한다. 임명장 사본 1 부는 소방대장에게 제공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자신의 귀국 예정일 (DEROS) 최소 한달 전에 교체되어야 한다.

b. 시설/건물 관리자는 지역 주둔지 소방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매 검열시 유효한 훈련 인증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화재 검열을 매월 실시하고 발견된 화재 위험을 시정한다. 발견 및 시정 조치는 관리자들과의 화재 예방 문서철에 관리되어야 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지정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인가된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설/건물 관리자 및 일등 상사는 정기적인 숙사 검열을 실시하여 표준 화재 안전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c. 모든 기관/부서는 시설물 화재 예방/신고 및 대피 계획이 수록된 예규 (SOP) 가 있어야 한다 (별지 B 참조). 본 계획서는 건물 내 게시판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한다. 모든 기관/부서는 자체검열을 실시하여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C 및 D 참조). 복잡한 층 계획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시설 개략도 및 대피 계획을 시설에 게시할 필요는 없다. 모든 건물에는 주탈출로 및 부탈출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d. 시설/건물 관리자는 지난 화재 검열 기록 및 인명 안전 관련 작업 요청서, 실시된 대피훈련, 실시된 화재예방 교육 기록이 들어 있는 화재 예방 문서철을 관리한다.

e. 시설/건물 관리자는 직원들이 화재 예방 책임 및 화재 보고, 대피, 화재 진압 절차에 대하여 훈련받고 숙지하고 있도록 한다.

f. 본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태만한 행동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설/건물 관리자는 해당 인원을 사령관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허위 또는 실수로 경보전달, 고의적 소화제 방출 및 소화기 손상을 일으킨 인원 역시 보고한다. 사령관 및 감독관은 해당 인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g. 시설/건물 관리자는 화재 경보장치 및 감지장치를 일상 사용하기 전에 소방대의 사전 인가를 받는다.

h. 시설/건물 관리자는 책임하에 있는 건물의 주출입구에 비상 연락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4 시간 사용되는 건물에는 본 정보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i. 시설/건물 관리자는 책임 하 모든 건물의 번호가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j. 막사에 거주하는 병사를 담당하는 사령관은 화재 발생시 취침 인원이 신속하게 기상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준비한다.

k. 인원들이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비상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동력을 사용하는 소방 장비가 필요한 훈련은 소방대장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대피 훈련은 미 화재방재청 (NFPA) 표준 101, 건물 및 구조물 화재로부터의 인명 안전 규범 (LSC) 에 따라 실시된다. 주둔지 소방대는 지역 화재 대피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 특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및 요양 시설	연 6 회
(2) 보육원	최소 월 1 회
(3) 병원	각 조별로 분기마다
(4) 학교	학기 중 매월
(5) 막사/기숙사	인원들이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정기적으로
(6) 사무 상가 호텔 집회 장소 고층 건물 아파트 건물 교도 시설 공장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절차를 교육한다

l. 화재 또는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소방대장 또는 화재 예방 차장, 작전 소방부대장, 근무중인 선임 소방장교는 권한을 대행하여 작업을 중지시킨다.

m. 소방대장 또는 그의 부재시 근무중인 선임 소방장교 (SFO) 가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책임진다. 작업중에는 소방 기관에 속하지 않은 인원은 명령을 내리거나 선임 소방장교나 소방관에 간섭하지 않는다.

n. 본 팜플렛에 수록되어 있는 화재 예방 및 방화에 관련된 신고 요건은 육군규정 335-15에 의거하여 통제 부호 할당 요건의 예외가 된다.

o. 화재 신고 절차. 화재가 진압되었더라도 모든 화재는 즉시 911로 전화하여 신고한다. 911에 전화할 경우 신고자의 성명 및 계급, 연락처, 화재 또는 긴급 상황 발생지, 그리고 911 접수자가 요구하는 모든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개인은 화재 진압 여부에 상관없이 화재를 발견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방대에 알려야 한다. 화재 신고 전화번호는 별지 E에 수록되어 있다.

p. 본 팜플렛의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 화재방재청 표준이 적용된다. 한국시설관리본부에 소속된 해당 지역 화재 예방 전문가 (화재 및 긴급 업무과장)는 사법권한을 가지며 업무 수행시 올바른 절차상의 의혹이나 소방에 관한 문제점들은 그와 상의한다. 문서화된 지침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가장 엄격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적인 화재 예방 수칙

2-1. 인명 안전. 출구.

a. 모든 출입문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

b. 출구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1, 인명 안전 규범에 따라 설치한다. 계단 및 문간을 포함한 탈출로는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c. 맹꽂이 자물쇠 및 걸쇠, 스로볼트, 가로장 쇠막대는 미국 화재방재청 표준 101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d. 현존하는 출구를 차단, 방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파괴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1을 엄격히 준수하여 여분의 출구(들)을 설계, 위치, 배열하여 제공한다.

e. 출구 조명 및 표시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1을 따른다. 출구 조명의 전등 교체는 시설/건물 관리자가 담당한다. 낡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작동하지 않는 출구 조명의 전등은 발광 다이오드 (LED) 형으로 교체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해당 전등의 교체를 위하여 시설 공병 작업 요청서 (FEWR)을 제출한다.

f. 설치된 비상 조명 장치는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비상 조명 장치의 전구를 교체할 책임이 있다.

g. 자동 폐쇄문은 계단으로 가는 통로를 보호한다. 본 출입문은 막거나 항상 열려 있도록 버팀목을 대어서는 안된다.

h. 인원은 방화문 또는 방연문, 방화셔터를 열어 고정하거나 막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i. 방화문의 제거는 금지된다.

j. 방화문의 자동 폐쇄 장치 제거는 금지된다.

k. 방화문에는 화재시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 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l. 방화문은 어떠한 식으로도 변형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m. 복도로 통하는 개별 방의 문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n. 비상구 방향으로 열리지 않는한 방충망 문은 설치될 수 없다.

o. 복도 및 회랑, 계단, 그리고 비상구 및 다락방, 계단 밑 공간으로 향하는 현관은 창고 또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2-2. 건축 및 개조, 현대화

a. 건축 계약에 있어서의 화재 예방 요건. 모든 건축 계약은 반드시 공학교범 385-1-1, 미 육군 공병단 (USACE) 안전 및 건강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사항은 미 연방 취득규정 (FAR)의 요건이다. 공학교범 385-1-1 의 9 장 및 10 장은 화재 예방 및 진압 그리고 용접 및 절단에 대하여 각각 다루고 있다. 본 교범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usace.army.mil/inet/usace-docs/eng-manuals/em385-1-1/toc.htm>.

b. 모든 수리 및 건축 프로젝트에 견고한 소방공학을 적용한다. 화재 예방 시스템 및 건축에 관한 부분은 현행 미 국방성 (DOD) 화재 예방 정책, 연합 소방규정 3-600-01, 설계: 시설 화재 예방 공학 및 미 화재방재청 표준을 따른다.

c. 구조물 건축 및 개조는 미 육군성 양식 4283 (시설 공병 작업 요청) 에 대한 시설 관리대 (DPW)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d. 주둔지 화재 예방 사무소는 미 육군성 양식 4283 및 미 국방성 양식 1391 을 포함한 모든 건축 및 개조, 개선 계획을 검토한다. 본 사항에는 한국 내의 미 국방성 기관 및 비 예산 자금 (NAF), 미 육군 및 공군 매점 (AAFES), 자가작업 계획이 포함된다. 계획에 필요한 자금은 정확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설비, 소화기 캐비닛, 소화기 그리고 모든 인명 안전 요건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계약업체는 화재 경보 및 진압 설비 명세서 및 설계도를 소방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인가 받는다.

e. 모든 개선/개조/현대화 계획 자금은 해당 계획에 속하는 모든 지역이 화재 예방 및 진압 설비, 소화기 캐비닛, 소화기에 대한 현행 규정 요건 및 인명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할당되어야 한다. 자금 부족은 본 요건의 태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f. 개선/개조/현대화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역이 개선/개조/현대화될 시 화재 진압 및 감지 설비 확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설비 계산시 참작의 대상이 된다.

g. 화재 감지 및 진압 설비 명세서 및 설계도를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소방대에 제출하는 기관은 해당 명세서 및 설계도와 함께 설계자의 자격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h. 소방대장 또는 지정된 대리자는 최종 검토 및 시공 전 브리핑을 비롯한 설계 회의에 참여한다.

i. 변경 또는 개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설치된 내부 마감재 및 이동식 칸막이는 연합 소방 규정 3-600-01의 현행판에 따른다.

j. 계약 주무관은 다음과 내용을 건축 계약서 포함시켜야 한다:

"화재 예방. 계약업체는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에 따라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희망 업체는 계약 사무소에서 본 팜플렛의 사본을 검토할 수 있다. 계약 계획 및 명세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주무관의 사전 협조 및 승인 없이 본 팜플렛의 내용을 계약사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다."

k. 모든 부대 시설, 퀵셋 또는 자가작업자 또는 수리 및 영선 (R & U) 팀과 관련된 부동산 시설에 대한 건축 또는 변경, 개조, 대형 수리는 미 육군성 양식 4283, 시설 공병 작업 요청에 대한 시설 관리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l. 자가작업 또는 수리 및 영선 팀은 전기와 관련된 수리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m. 자가작업 또는 수리 및 영선 팀은 부동산 시설에 설치된 난방 및 온수 장비를 수리할 수 없다.

2-3. 소화기

a. 시설/건물 관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지역의 모든 소화기를 매일 점검한다. 본 점검 사항은 시설 화재 예방 문서철에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b. 소화기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 휴대용 소화기에 대한 표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c. 소화기는 화재 진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d.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소화기 사용은 즉시 소방대에 보고되어야 한다.

e. 10 파운드 또는 15 파운드의 다용도 ABC 분말 소화기는 가능한 모든 장소에 설치한다.

f. 시설 내의 소화기는 화재 진압 용도 외의 출입문을 고정하거나 장비를 받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연중 정비 또는 실제 화재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처음 설치된 장소에서 소화기를 옮겨서는 안된다.

g. 시설용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별도로 지녀야 하며 인가된 받침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h. 정비 또는 관리가 필요한 소화기는 사용하용 기관이 소방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인도 및 인수한다.

i. 빈번하게 영외로 배치되는 군용 차량은 해당 기술교본에 명시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대에서는 본 소화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해당 부대 차량 정비소에서 구입하여 교체할 수 있다.

j. 항공기 주차장 지역 또는 엔진 시동 및 항공기 정비 지역의 주둔지는 소화기를 적절한 곳에 배치할 책임이 있다. 소화기는 해당 지역이나 항공기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항공기 정비사 및 유류 (POL) 담당 인원은 매월 비행장의 소화기를 검열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 소방대로 인도한다.

k. 급유 지역에서는 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l. 모든 상업용 주방 구역에는 K급 소화기를 설치한다.

m. 소화기를 보유한 기관이 해당 소화기의 교체를 위한 구매를 책임진다.

2-4. 흡연 통제

안전하지 못한 흡연 행위 및 부적절한 흡연물질 처리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모든 인원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 수칙을 집행 및 감시한다.

a. 천막을 포함한 모든 미 육군 구조물 및 시설, 창고 등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미 국방성 지역에서 흡연은 “지정 흡연 구역”에서만 인가된다.

b. 급유장치 및 벌크 산소 저장 시설, 역청 또는 플라스틱 코팅된 지역,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 취급 저장 지역, 항공기 주차 지역 50 피트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c. 폭발물이나 화학물, 인화성 물질, 고가연성 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d. 모든 시설 출입구 50 피트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e. 모든 인원들은 실외 흡연 구역에서 다른 인원들이 비연소성 용기에 흡연 물질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한다. 흡연 물질의 처리를 위한 용기는 **인가된** 철제 용기 (꽂초통) 로 자동으로 닫히는 철제 뚜껑이 있어야 한다.

f. 꽂초통은 물에 완전히 적신 뒤 매일 비워야 한다. 물에 적신 내용물들은 실외 쓰레기통/쓰레기 창고에만 버려야 한다.

2-5. 개방된 불, 용접, 절단 및 낫 땀질 작업

a. 어떠한 이유로든 미 육군양식 5383-R, 열 사용 작업 허가를 통한 환경과 및 소방대의 사전 인가 없이는 야외에 불을 피울 수 없다. 본 사항에는 쓰레기 소각 및 캠프파이어, 모닥불이 포함된다. 사령관급이 인가하지 않는 한 소각허가서는 발급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부대 사령관이 인가서가 필요하다. 모든 인가된 불은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기밀 자료의 소각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으며, 파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파쇄기를 구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대 환경과의 인가서 및 소방대가 인가하고 발급한 열 사용 작업 허가서가 있을 경우에만 기밀 자료를

소각할 수 있다. 소각하여야 하는 기밀 자료는 인가된 지역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자세한 지침은 주한미군 팜플렛 200-1, 환경 감시 표준을 참조한다.

b. 폭죽을 포함한 불꽃제조기술/불꽃놀이 사용은 공식적으로 통제되거나 인가된 전시 외에는 금지된다. 기술 자격을 갖춘 안전관은 불꽃놀이를 인가하기 전에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불꽃놀이는 인가되고 유능하며 자격증을 갖춘 계약업체만이 행할 수 있다. 모든 불꽃놀이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1123, 불꽃놀이 규범에 따른다.

(1) 열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미 화재방재청 표준 1123 에 규정된 주변 조사 및 위험 조사가 작업 예정지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둔지 사령관만이 미 화재방재청 표준 1123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불발된 불꽃탄이 발견될 경우 만지지 않는다. 해당 지역을 표시하고 소방대에 신고한다. 해당 불꽃놀이 계약업체가 불발된 불꽃탄을 제거한다. 해당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폭발물 처리반 (EOD) 에 연락한다.

c. 모든 용접, 절단 및 녹 땀질 작업은 소방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모든 안전 사항을 충족시키는 개인 용접작업장은 소방대장의 총론 인가서를 취득할 수 있다. 소방대는 열 작업 허가서 및 작업장에서 모든 안전주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매년 검토한다. 이 때 새로운 허가서가 발급된다. 매 용접 작업시마다 각각의 미 육군성 양식 5383-R 이 필요하다. 발화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대기한다. 24 시간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서의 용접 작업은 건물을 닫기 최소 한 시간 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 시설/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떠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d. 별지 H에는 용접, 절단 및 녹 땀질에 대한 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다. 본 점검표는 모든 용접, 절단 및 녹 땀질 작업의 허가서로서 사용된다.

2-6. 주거 관리

a. 가연성 물질은 기계실, 전기실, 계단 및 천장공간, 건물 외부에 맞대어 두거나 기타 위험지역 내에 보관하면 안된다.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용기는 비가연성 재질이거나 인가된 자동 소화 플라스틱 제품이어야 한다.

b. 초과된 양의 폐기물은 매일 건물에서 치워야 한다. 외부의 폐기물 저장 용기는 건물에서 최소 10 피트 떨어져야 한다. 모든 가연성 물질은 난로에서 적어도 3 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c. 스프링클러 헤드, 세척기 헤드 및 창고 물품들의 주위는 최소한 18 인치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d. 소화기, 수동 폴 스테이션, 스탠드 파이프 시스템, 비상구등과 같은 화재 관련 장비 주위는 최소한 36 인치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e. 주방과 제과점의 배기장치는 후드, 필터, 도관, 전기 장치와 장비를 포함하여 기름때와 먼지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기름때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화재방재청 표준 96, 상업적 요리

작업의 환기 조절과 화재 보호에 따라 전문적으로 청소를 해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되는 수준으로 기름때와 오일이 축적될 경우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한다.

f. 주방에 있는 조리 기구와 집시세척기의 배기 장치는 공기 운반 물질을 위한 배연장치의 표준인 해당 미 화재방재청 표준 91 과 상업적 요리시 통풍관리와 화재보호의 기준인 미 화재방재청 표준 96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g. 세탁소 내의 의복 건조기에 있는 실 보무라지 수집기와 목공소의 대패밥과 톱밥 수집기는 매일 청소해야 한다.

h. 가족 숙사의 벽난로 굴뚝은 시설 관리대 인원이나 인가된 업자에 의해 일년에 한번 검열, 청소 및 정비되어야 하며, 만일 벽난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청소할 필요가 없다.

i. 작업복, 종이 부스러기, 기름과 페인트에 적신 걸레, 대패밥 먼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물질은 자동 밀폐식 철제 용기나 뚜껑이 있는 비연소용 용기에 다 처리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자주 건물에서 치워야 한다. 가연성 포장 재료는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j. 청소부가 사용한 걸레, 자루 걸레, 그리고 청소용 보급품은 밀폐된 철제 용기, 흡연이 금지된 지정된 청소 도구실 또는 건물 밖에 보관해야 한다. 자루 걸레의 머리부분을 바닥에 두어서는 안되며, 들어 올려서 적절히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한다.

k. 지나친 양의 스테레오나 텔레비전의 재포장을 위한 마분지 상자는 숙사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부대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창고실을 마련해야 한다.

2-7. 난방 장치

a. 미 육군의 모든 실내 난방기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 의해서만 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 자격 심사는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대 직원이 담당한다.

b. 비통풍 탄화수소 연료 난방기구를 숙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탄화수소 연료에는 JP-8, 천연가스, 휘발유, 연료 오일, 알코올, 석유 기반의 오일과 등유가 포함된다. 도관형 휴대용 휘발유 난방기구는 (예를 들면, 허먼 벨슨 또는 유사품) 소방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느 건물에서도 사용이 인가되지 않는다.

c. 영구 설치된 난방기만이 승인된 난방기로서 건물에서 사용하도록 인가되어 있다. 육군에서 인가된 표준, 휴대용 난방기에 한해서만 천막에서의 사용이 인가되어 있다. 주둔지 소방대장은 천막에서의 휴대용 전기 히터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d. 보험업자 연구소 (UL) 나 공장주 상호보험 (FM) 에서 승인받은 라벨이 붙어있는 장비나 물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와 상응하는 한국제와 일본제 표준도 사용 가능하다.

e. 휴대용 전기 난방기는 사용전에 서면상으로 시설 관리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난로를 인가할 때는 UL 이나 FM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전기회로의 형태는 난로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어야 한다. 전기 코드선과 플러그는 좋은 상태여야 하며 공급회로는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 화재방재청 표준 70, 국제 전기법은 전기의 배선과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인가된 전기공들만이 전선, 부속품 및 부착물을 설치,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f. 개인 소유의 난방기는 건물, 천막 및 차량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 g. 어느 차량에서도 실내 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 h. 실내 난방기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난방기 위에 의복을 두어서는 안된다.
- i. 난방기는 유출검열절차에 익숙한 자격 있는 직원이 설치하도록 한다. 사용 전 담당 부서의 방화 또는 안전요원이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 j. 실내 난방기의 검열은 매일 실시한다. 연료의 흘림/유출은 발견 즉시 청소하고 히터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근원을 찾아 시정해야 한다.
- k. 난방기의 연료로는 제조원에서 명시한 것만을 사용한다. 연료탱크는 천막과 건물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 남은 연료 캔은 건물 외부의 정해진 위치에 보관한다.
- l. 실내 난방기는 연소기 부분이 만져서 뜨거울 때는 연료 주입을 하면 안된다. 실내 난방기는 건물내에 사람이 없을 때는 꺼야 한다.
- m. 난방기의 연료주입, 사용 및 보존은 제조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비인가 변경이나 개조(유사품), 비인가 연결 호스를 사용해선 안된다.
- n. 실내 난방기를 사용하는 천막에서는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한다. 화재 감시자에게는 경보절차, 화재 진압 절차, 그리고 일산화탄소 독성의 조기 발견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난방기는 사람없이 남겨둘 수 없다. 개인 업무 지역을 떠날 때는, 난방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탄화수소 연료나 가스를 사용하는 천막에는 광전자식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한다.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천막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연기/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입하는 것은 각 단위 부대에서 책임진다.
- o. 주유소, 차고, 도색실, 그리고 항공기 격납고 같이 인화성 증기가 생기기 쉬운 지역에서는 불꽃이 보이는 난방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 p. 실내 난방기가 과열되면, 즉시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소방대에 연락한 다음 소화기를 가지고 대기한다. 과열된 실내 난방기의 연소판 불꽃을 끄려고 시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증기화된 연료가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게 되면 점화하여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 조리 기구

- a. 튀김냄비는 작업상의 자동 온도조절기와 별도로 자동 상한 온도조절기를 갖추어야 한다. 본 자동 온도조절기는 기름의 온도가 표면에서 1 인치 (25.4 mm) 아래에서 화씨 475 도 (섭씨 246 도) 를 초과하게 되면 연료 또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동 상한 온도조절기는 매 6 개월마다 자격증을 갖춘 전기공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일 및 점검 시간, 합격/불합격 여부, 점검자 성명 및 기관을 나타내는 인가된 라벨을 튀김냄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b. 가정 형태의 주방을 갖추지 않은 건물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방 용도로만 설계되어 인가된 곳에서만 조리를 할 수 있다. 주방이 없는 막사, 창고, 사무실, 판매점, 작업장 등에서 콘로 또는 전기 프라이팬, 가스레인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c. 조리작업은 철저히 감시하고 규칙적으로 모든 곳을 청소하여 기름때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

d.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또는 부탄) 를 연료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기구는 부대 내에서 난방 또는 조리, 조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e. 숯불석쇠는 건물 내 또는 베란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숯불석쇠 사용시 연소성 물체로부터 최소 10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조리가 완료되면 뜨거운 숯은 물을 사용해 끄거나 타지 않는 물체로 덮어야 한다. 숯은 건조한 장소에 적절히 보관한다.

2-9. 인화성/가연성 액체 연료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규범.

a. 모든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저장은 미 화재방재청 표준 30 에 따른다.

b. 사용 기관은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저장 상태를 감시한다. 비어있거나 가득 차 있는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용 드럼통, 원통을 같은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술교본 38-400 에 의거하여 특별히 건축된 장소에 저장한다. 서로 맞지 않는 물질은 별도로 저장한다.

c. 인화성 액체를 숙사 또는 공공 시설, 창고 혹은 실내 난방기, 조리기구, 개방된 전기모터, 차량 등의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건물 내에 저장하거나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용접 및 절단, 낫 땀질, 마모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절대 저장하지 않는다.

d. 휘발유 및 아세톤, 알코올, 나프타, 벤젠 등의 인화성 액체는 불을 붙이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의복, 연장, 장비 또는 건물의 내장재의 세척에 솔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인가된 솔벤트만이 세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e. 휘발유 및 오일 그리고 다른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맨홀이나 하수도, 배수로에 쏟아 버려서는 안된다.

f. 석유 제품이 유출될 경우 적절한 유출 청소 절차를 시행한다. 환경과에 기름이 스며든 지면을 신고한다. 살포된 모든 지점에 수거용 냄비 혹은 대야를 준비한다.

g. 주둔지 소방대의 허가를 받지 않는한 휘발유 및 페인트, 기타 인화성 액체를 막사, 사무용품실 또는 기타 특수설계되지 않은 곳에 저장하지 않는다. 인가된 지역에서는 인가된 저장용 철제 캐비닛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 용기에 “인화성 물질—화기 엄금” 표지를 붙인다. 사용자는 저장된 모든 항목을 캐비닛의 외부 문에 표시하고 민감한 물질들을 함께 저장한다. 인화성 및 가연성, 위험 물질이 저장된 모든 용기는 원래 용기 또는 해당 제품에 맞는 인가된 종류의 용기에 저장한다. 저장된 인화성 및 가연성, 위험 물질/항목에 대한 각각의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 (MSDS) 현재판은 인터넷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가된 저장용 철제 캐비닛이란 저장된 액체나 불이 용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상업용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저장 용기를 일컫는다.

h. 휘발유, 제트 연료 등의 1 급 인화성 액체는 인가된 안전 용기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일반적인 창고에 인화성 액체를 저장할 경우 별도의 부속건물이나 다른 용도로부터 격리되어 표준 4 시간 짜리 방화벽 또는 2 시간 이상의 내연 등급을 가진 방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i. 도색이나 정비에 사용되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페인트 및 오일, 니스, 기타 흡사한 물질을 작업장이나 정비소에 보관할 경우 총량이 120 갤런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이것은 “인화성 물질—화기 엄금” 이라고 적힌 인가된 저장용 철제 캐비닛에 보관한다. 임시로 폐쇄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페인트의 양은 열흘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j. 석유 저장탱크 집결지 및 대형 수송관, 파이프선, 저장 정유소에 관한 주의사항은 야전교범 10-69, 작전 전구내 석유 공급 및 미 화재방재청 표준 30,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규범을 참조한다. 모든 선적 용기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704, “긴급 대응을 위한 위험 물질 식별 표준 시스템” 에 의거하여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k. 인화성 액체로 작동하는 항공기 및 차량, 기타 장비는 건물 내에서 연료를 주유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시설 소방대장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사전 인가 없이 차량을 비인가 시설에 밤 동안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l. 작업중 연료가 새거나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히 소방대에 보고한다. 인원들을 해당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해당 지역에 차량 또는 기타 점화 장치가 있는 장비의 진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m.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는 일반 목적의 창고의 여유 공간을 표준 방화벽으로 막아 저장할 수 있다.

n. 인화성 액체가 담긴 덮개 없는 용기의 100 피트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o. 탱크 또는 기타 용기로부터 인화성 증기가 방출되는 지역이나 주유 또는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50 피트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p. 전기 고정장치 및 스위치, 모터, 배성장치, 확장 코드선, 부속품, 휴대용 전등, 전기제어장치, 손전등 그리고 모든 신호기와 통신시설을 인화성 증기에 근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 화재방재청 표준 30 및 70 에 의거하여 인가된 증기방지된 종류이어야 한다.

q. 주요 주유 장비 조작은 적절히 훈련받은 인원에게만 허가된다. 해당 장비 및 그 발화 위험성 그리고 인화성 액체 취급 규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작동자는 가장 가까운 전화기의 위치 및 소방대에 전화하는 법, 그리고 응급 소화작업 장비의 위치 및 작동에 익숙하여야 한다. 덮개 없는 용기로 연료를 빼내는 작업은 엄격히 금지된다.

r. 폭발물 수송차량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폭발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있는 동안 휘발유를 주유할 수 없다. 엔진을 멈추고 모든 조명과 라디오를 끄고 접지 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주유 작업을 할 수 있다.

s. 임시변통의 연료 주입 또는 연료 제거 작업은 금지된다. 연료 배급 및 저장 위치, 정돈, 장비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및 관련 미 육군 기술 교본의 규정에 의거한다.

t. 주유 작업을 하는 지역의 50 피트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한다.

2-10. 위험 화학물 및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a. 탄약 및 위험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건물 및 지역에는 적절한 화재 및 위험 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 소방대 및 안전 요원에게 적절한 화재 및 위험 부호의 사용에 대하여 상의한다.

b. 탄약 저장.

(1) 탄약의 취급 및 보관은 국방성 교본 6055.9-STD, 미 국방성 탄약 및 폭발물 안전 표준 및 미 육군성 팜플렛 385-64, 미 육군 폭발물 안전 프로그램에 의거한다.

(2) 기름걸레 및 가연성 부스러기, 종이 같은 폐기 물질은 폭발물 위험 지역 내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자동 폐쇄 뚜껑이 있는 철제 용기에 담아야 한다.

(3) 성냥 또는 불꽃, 스파크를 유발하는 장치는 모든 폭발물 위험 지역에서 금지되거나 주둔지 사령관의 서면 허가서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4) 지정된 구역 이외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폭발물이 있는 건물의 15 피트 내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6) 차량 및 항공기가 폭발물을 운송 또는 적재하는 중에는 뚜렷하게 현수막으로 표시한다.

(7) 절단 및 용접, 납땜용 장비와 같은 스파크 또는 불꽃을 유발하는 장비를 폭발물을 보관 또는 취급, 조립하는 건물이나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과 및 주둔지 소방대의 협조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폭발물 저장지역 내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없이 방치될 수 없다. 미 육군 규정 385-64 및 국방성 교범 6055.9-STD DOD, 기술교본 9-1300-214 에 따라 화재 위험 부호 번호 및 금연 표지를 각 창고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9) 폭발물을 적재한 항공기는 탄약이나 폭발물을 옮기기 전에는 정비 격납고에 주기시킬 수 없다. 생존 및 구명 키트에 있는 개인 탈출 시스템 및 조명탄의 카트리지가 및 추진 장치만 예외된다.

(10) 폭발물 부서의 책임자는 폭발물의 위치 및 부호/위험표지가 변경될 때마다 행정 전화선을 통하여 소방대 통신실에 통보한다.

(11) 인화성이 위험수준까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폭발물 지역 및 폭발물 시설/지역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12) 폭발물 저장 면허, 미 8 군 양식 296-R 은 각 창고마다 준비하여야 하고 면허증은 안전과로부터 매년 갱신받아야 한다.

(13) 지상 탄약고나 외곽 창고부지/완전폭발물 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없애 적어도 50 피트 폭이 되는 방화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방화선은 풀을 뽑거나 잘라서 가연성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한다.

c. 위험 물질:

(1) 유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산성 액체 및 기타 위험한 화학물의 집결 저장은 통풍이 잘 되는 건물에 격리하여 보관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물질과도 격리하여야 한다. 용기는 모든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안전보호를 하여야 하며 저장소는 다른 건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유류 (POL) 취급 지역이나 산성액체가 있거나 그 외의 위험한 화학약품이 있는 건물에서는 흡연 및 성냥, 라이터 사용, 기타 불꽃 또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3) 위험한 화학물은 특수 목적으로 설계 및 지정, 격리된 건물 내에 보관한다.

(4) 위험한 화학물 및 탄약, 폭발물이 있는 건물 및 보관 지역에는 적절한 위험 표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기술교범 3-250 및 미 화재방재청 표준, 주한 미 육군 규정 700-3 에 의거하여 기타 안전보호를 실시한다.

2-11. 도색

a. 반복적인 분무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무 도색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시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둔지 소방대의 서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b. 도색 작업장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도색 (분무 및 붓칠) 작업을 할 경우 다른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며 또한 가연성 건축물로부터 최소 50 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도색 작업실이 부속 정비실 내부에 있거나 50 피트 이내에 가연성 건물 또는 위험 작업을 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건물을 요철 양철 판자 또는 석고 판자, 석조 같은 비연소성의 재료로 건축하여야 한다.

c. 도색실 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꽃이 보이는 난방기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d. 도료 혼합기에는 폭발 방지 모터만 사용할 수 있다.

e. 도색실 내의 도색 재료 공급은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1 주일 분량으로 제한한다. 도색 작업장과 실내의 도색 활동은 본 팜플렛에 있는 인화성 액체 보관 및 사용상의 화재 예방 표준을 따라야 한다.

f. 도색 작업 장소는 충분한 통풍이 되어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g. 도색 작업장 및 그 주변을 특별히 주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과 관계없는 가연성 물체는 치워야 한다.

h. 도색 제거나 나무 착색을 위한 토치 램프 및 임시로 제조한 개방 불꽃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시도할 경우 소방대로부터 미 육군성 양식 5383-R, 열 작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2-12. 아스팔트 및 타르 탄광

a. 탄광을 설치하기 전에 주둔지 소방대로부터 미 육군성 양식 5383-R, 열 작업 허가서와 함께 인가를 받아야 한다.

b. 아스팔트 및 타르 탄광은 건물이나 가연성 물체로부터 최소 50 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용중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시 안전한 진압이 가능한 경우 소화작업을 시도하고 즉시 주둔지 소방대에 알린다.

c. 아스팔트 및 타르 탄광은 작업온도 측정기를 갖추고 항상 깨끗하고 읽기 쉽게 유지하여야 한다.

d. 최소 2 개의 소화기 (2A-60BC) 를 모든 탄광 작업 중에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모든 아스팔트 및 타르 탄광의 연료공급선에는 잠금 밸브가 있어야 한다.

2-13. 압축 가스 실린더

용접 및 절단을 위한 압축 가스의 취급 및 보관은 육군규정 700-68 및 기술교본 743-200-1, 미 화재방재청 표준 51, 용접 및 절단, 연합 과정을 위한 산소-연료 가스 장치의 설계 및 설치 표준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저장한다.

a. 산소통은 오일 및 그리스, 고인화성 물질과 별도로 보관한다.

b. 인화성 및 비인화성 가스는 최소 20 피트, 권장 50 피트 거리를 두고 보관한다. 빈 실린더는 가득 찬 실린더로부터 격리한다. 모든 실린더는 밸브에 안전뚜껑을 부착한다. 빈 실린더는 표시하거나 “비었음” 라벨을 부착한다. 격납고 또는 저장 지역 전체에 “비었음”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실린더에도 “비었음”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모든 압축 가스 실린더는 열기 또는 습기, 장난, 도난, 기계적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고장하여야 한다 (예: 쇠사슬 또는 끈, 받침대).

d. 같이 보관하면 위험한 액체 또는 가스를 담은 실린더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e. 아세틸렌 실린더는 사용전 최소 60 분간 직립 상태로 두어야 한다.

f. 용접작업에 사용할 산소 및 아세틸렌 실린더는 주한미군 팜플렛 200-1, 환경 표준에 의거하여 손수레에 설치하거나 벽에 고정하여 항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g. 국제연료가스장치를 위한 특수장비의 설치와 작동은 미 화재방재청 표준 54, 국가 연료가스 규범 ANSI Z223.1-2003 및 현재판 연합소방규범 3-600-01 에 의거한다.

2-14. 전기배선 설비 및 장비, 기구

- a. 현행 미 소방 방재청 표준 70, 국가 전기 규범은 모든 전기 배선과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직 인가된 전기공만이 전기 배선 및 고정물, 부속품, 전기기구를 설치 및 수리, 교환, 부착할 수 있다.
- b. 전기계통과 장비의 설치 및 수리는 자격을 갖춘 시설 관리대 소속의 전기공이나 적절한 면허를 갖춘 계약업체가 실시하여야 한다.
- c. 기존의 전기회로에 전기장비를 추가할 경우 사전에 항시 시설 관리대 소속의 자격있는 전기공으로부터 전기회로에 대한 과부하 상태 발생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d. 전기기구 중 미국 제품은 UL 및 FM 같은 국가 공인 검사연구소의 승인이 없는 것, 한국 제품은 국제 과학 연구 학회 또는 한국 정밀 기계 센터의 한국표준을 받지 못한 것 그리고 일본 제품은 국제상공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기구의 사용자는 제품과 함께 포장되어 있는 제작자의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 e. 전기회로 차단기나 퓨즈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는 설치하지 않는다. 차단기 스위치가 꺼졌거나 신관이 터져서 회로가 중단되면 회로에 전원을 넣기 전에 반드시 방해 요소를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회로차단기는 차단기가 스위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외에는 스위치로 사용할 수 없다.
- f. 건전지. 모든 건전지의 취급 및 보관, 처리는 엄격하게 기술 회보 (TB) 43-0134 를 따라야 한다.
- g. 전선연장 코드는 UL 승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코드 선은 충분한 용량 (와트 및 암페어) 을 지녀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용량이 적은 코드 선에 기구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연장 코드선을 연속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선에 못을 치거나 벽이나 천정에 고리못을 쳐서 파이프 위로 걸쳐 내리거나 출입문 또는 깔개 밑을 통해서 연결하여 고정 배선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연결 코드선은 창문이나 벽의 구멍을 통과하면 안되고 출입문 사이와 카펫 또는 깔개 밑을 지나서는 안된다. 코드 및 플러그는 낡아 보이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코드선은 꼬아서 이어 쓰면 안된다. 연장 코드선은 제작자의 전기기구 사용상의 경고지시가 있을 경우 해당 전기기구에 사용하면 안된다.
- h. 다중 소켓은 함께 연결하면 안된다. 한 다중 소켓에 연결된 기구의 전체 와트는 660 와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 i. 건물 거주자는 회로 차단기와 퓨즈 박스를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 터진 퓨즈나 꺼진 회로 차단기는 과부하 또는 다른 문제의 표시이므로 즉시 시설 관리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 j. 야외용으로 설계된 조명 장비는 건물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k. 전기담요 사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요는 제작자의 지시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l. 물을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는 이중 안전장치 (GFCI) 로 된 플러그를 설치하여야 한다.

m. 휴대 전화 충전기를 포함하여 어떤 크기의 변압기이든 비가연성 표면 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변에 어떤 가연성 물질도 놓여 있으면 안된다. 변압기는 매 근무일이 끝날 때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야한다.

2-15. 차량 주차 및 보관품

a. 차량 주차. 차량을 주차할 시 건물 및 건축물, 화재경보기, 개폐 표시형 밸브 (PIV), 소방대 연결부, 소화전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긴급출동장비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차량 및 장비, 보관품은 위에서 말한 소방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소화전 또는 개폐 표시형 밸브, 소방대 살수장치 연결부로부터 20 피트 내에 차량 또는 쓰레기통, 기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인화성 액체 수송차량의 주차. 인화성 또는 2 등급 가연성 액체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탱크 차량은 접지를 하여야 하며 3 대 이상의 차량은 단체로 주차할 수 없다. 단체 주차의 거리는 최소한 20 피트 떨어져야 한다. 주차장소는 화재 진압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선별되어야 하며 모든 탱크 차량은 다른 차량의 이동 없이 (자력 또는 견인 모두) 제자리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c. 석유 연료 트럭은 연료 배달시를 제외하고 의료시설 및 공공 시설, 학교 및 숙소의 100 피트 내에 주차할 수 없다. 또한 기타 구조물로부터 50 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d. 일반 차량은 주차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건물 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e. 탄약 및 폭발물 운반 차량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지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f. 개인 소유의 휘발유 동력차량 및 장비는 미군 시설내에 보관할 수 없다.

g. 화재에 대한 추가적 주의사항은 미 육군규정 385-10 을 참조한다.

2-16. 소화전

a.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화전이 고장날 경우 즉시 소방대에 알린다. 고장난 소화전은 직경 9 인치의 둥근 철판에 선명한 색으로 표시한다. 철판의 가운데에 있는 구멍을 소화전 배출구에 맞추고 배출구 뚜껑을 닫아 철판을 소화전에 부착한다. 소화전이 복구되는 즉시 소방대에 알린다.

b. 소화전은 소방대의 사전 인가없이 화재진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c. 어떠한 용도든지 소화전을 사용하기 전에 시설 관리대 및 소방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d. 소화전으로부터 20 피트 이내에 주차는 금지된다.

2-17. 총론

a. 다리미는 사람 없이 방치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b. 양초 및 향은 교회내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 시설에서 테이블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금지된다. 촛불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는 항상 6 인치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 및 향을 기숙사나 천막, 호텔 객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적이 “전혀” 없거나 심지가 제거된 장식용 초는 소지할 수 있다. 모든 인가된 양초 또는 향은 소유자가 방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소화되어야 한다.

- c. 소방대장은 연중 화재 안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간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 d. 시설 화재 경보기를 이용하는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방대에 통보한다.
- e. 화재 경보기나 감지 및 진압 장치를 만지거나 경보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f. 주방 화재 진압 장치가 작동되어 분출되었을 경우 해당 주방 장치는 화재 진압 장치가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g. 액화 산소 (LOX) 용기 및 트레일러, 저장 탱크, 항공기 작업을 하는 인원은 특수 설계된 액화 산소 보호복을 착용한다. 보호복은 100% 면으로 알맞은 군용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복은 깨끗하게 보관하며 오일이나 기름때가 없도록 한다. 보호복은 오일이나 기름때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정비 인원은 액화 산소 작업이 끝난 뒤 흡연을 하거나 불 근처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특수활동을 위한 화재 예방 조치

3-1. 항공기 작업: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a. 항공기 정비장교는 격납고 내에 주기한 항공기의 화재안전 예방조치와 격납고로부터의 긴급 이동,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충분히 다룬 서면상의 작업절차를 소방대장 및 안전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 b. 정비소 내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필요하다. 정비소 지역의 소화기 설치는 미 소방방재처 표준 10, 29 미 연방법령 1910 및 TB 5-4200-200-10 을 따라야 한다. 정비를 마칠 때나 항공기의 수리 중에 소화기는 100 피트 이내에서 작업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 항공기 정비장비 (AGE) 는 가동중인 항공기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위치시키며 충분한 길이의 동력 케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 d. 불꽃이나 전기 스파크가 튀는 장비는 소방대장 및 안전과의 인가 없는한 항공기의 수리 및 정비 중에 사용할 수 없다.
- e. 항공기의 연료통이나 탱크 외부 수리 시에는 격리된 지역이나 인가된 격납고에서 실시하되 가장 가까운 흡연지역이나 기타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 f. 연료통 또는 연료탱크 외부 수리는 철저히 깨끗이 하고 인가된 폭발 계량기 또는 인화성증기-실험계량기로 농축연료검사를 해야 한다. 통이나 탱크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도

적절한 산소가 들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기를 검사하고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며 한정된 공간에서 위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개인이 한정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g. 항공기 연료통 수리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현행 육군지시에 따라 인가된 것이어야 한다.

h. 연료탱크나 항공기 연료 통에 고인 나머지 연료를 제거한 후 정비 인원은 통의 공기를 빼낸다. 통에서 공기를 빼는 동안 인가되고 적절히 조정된 폭발 계량기나 인화성 증기검사 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i.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연성 열풍기의 동력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 연료 통에서나 기타 인화성 물질의 용기에서 연료를 축출하여서는 안된다.

j. 항공기에 액화산소나 기체산소를 주입할 경우.

(1) 액화산소를 공급 탱크에서 항공기 장치로 주입할 시 장비 제작자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2) 모든 동력의 원천을 제거한다.

(3) 오일, 그리스 또는 기타 즉각적인 가연성 물질을 용기, 플라스크, 밸브, 조절기, 부속품 또는 기타 항공기 부품이나 충전장비에 접촉시키지 않는다.

(4) 산소장비는 기름때가 묻은 장갑이나 연장을 가지고 취급하지 않는다.

(5) 기름이나 그리스 묻은 옷을 착용했을 시에는 충전작업을 하지 않는다.

(6) 가능한 오랫동안 장비에 보호 뚜껑을 씌워 두고 최대한 신속히 교체한다. 충전하기 전에 모든 연결부의 청결을 검사한다. 먼지 또는 오물, 그리스, 기타 오염된 것이 발견될 경우 산소 작업 용도로 인가된 소독제나 솔벤트로 제거한다.

(7) 산소 보충 부속을 연결하기 전에 외관 검열에서 놓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호스 또는 배출 밸브를 통해 소량의 산소를 빼낸다. 호스나 배출 밸브는 몸과 장비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필요한 밸브만 조금 열어 사용한다. 우연히 배출되는 액화산소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8) 밸브가 새지 않도록 막는 것과 공급호스의 가스켓은 산소배급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한다.

(9) 배출 또는 통제 밸브가 얼음으로 막히게 되면 끊지 않는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한다.

(10) 기체상태의 산소는 신체나 의복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 액화 산소는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나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2. 공공 시설

a. 시설/건물 관리자는 각 공공 시설마다 서면으로 지명된다.

b. 공공 시설과 오락 시설의 관리인은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고 고용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화재 신고, 건물대피 및 응급 화재진압 절차를 이해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교육은 최초 시작 기점 이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본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1) 주위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화재의 위험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인식.

(2) 화재신고 절차와 건물에서의 대피절차.

(3) 소방대의 도착이 늦을 때 응급 소화장비의 사용.

(4) 비상구 등과 비상 조명의 작동을 보장.

(5) 마감 검열을 실시하고 보안 점검의 실시.

(6) 탁자와 이동식 의자를 사용할 때는 30 인치의 통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른 모든 지역은 36 인치 넓이의 복도를 만든다.

(7) 운영시간 중에는 모든 비상구가 잠기지 않고 막힘이 없도록 보장한다.

c. 관리인 또는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매일 마감검열을 실시한다. 이 책임은 청소부 직원이 대행할 수 없다. 마감검열 점검표는 건물 관리 책임자가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주방장비의 스위치는 꺼진 위치에 둔다.

(2) 모든 의자와 소파의 쿠션은 흡연 물질을 검열한다.

(3) 휴대용 전기조작 장치 또는 기구, 오락 및 자동판매기, 일과 후 필요치 않은 기구를 포함하여 스위치가 있는 것은 꺼짐 위치에 두어야 한다.

(4) 쓰레기통은 비우고 쓰레기는 용기에 담아 건물 밖에 둔다.

(5) 흡연물질은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연소성 물질과 분리하여 시설물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6) 화장실의 휴지통은 자동폐쇄 뚜껑이 달린, 인가된 비연소성 용기여야 한다.

(7) 비상구는 열기 전에 문이 잠겨 있어야 하며, 패닉 하드웨어와 비상구 등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d. 상업적 또는 식당형식의 요리를 하는 건물 관리 책임자는 다음절차를 따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1) 설치된 모든 기름때 필터와 주방 레인지 후드의 노출된 표면은 매일 청소하여 기름때의 축적을 막는다.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방에는 예비 필터가 필요하다.

(2) 주방 레인지후드와 배기 도관은 기름때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매 1년 또는 필요할 때마다 청소해야 한다. 횃수는 그 지역의 화재 안전을 위하여 매달 실시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청소 시 선풍기, 지붕, 통풍용 창, 외부 벽, 둥근 천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인가된 표식지가 후드, 덕트 및 여타 조리 장비에 청소 일시 및 청소자 성명, 소속기관을 명기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3)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각 레인지후드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a) 후드, 덕트, 필터 최근 청소 일자

(b) 시설 점검, 청소한 청부업자의 성명

(c) 소화시설 점검 시행 여부, 점검 시행자 및 날짜

(4) 그리스 필터가 없는 레인지후드 아래에서의 조리는 허용치 않도록 책임진다.

(5) 각 튀김냄비는 철판뚜껑이 준비되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덮는다.

e. 카펫, 커튼, 직물은 내연이나 방염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건물 관리 책임자는 증명서를 보관한다.

f. 특별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식 (배너, 조화장식, 조명, 성탄절 장식 등) 은 사용 전에 소방대의 허가를 받는다. 어떠한 장식이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되면 즉시 제거한다.

g. 소방 검열관은 사고 또는 비정기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설을 검열한다.

h. 소방 검열관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검열을 실시한다.

i. 공공 시설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과 소요사항:

(1) 화장실 또는 휴게실에 설치된 용기를 포함한 쓰레기통은 비연소성의 뚜껑이 달린 자동 폐쇄형이어야 한다. 휴대용 쓰레기통의 뚜껑은 쓰레기 처리를 제외하고 계속 닫아 두어야 한다.

(2) 폐기물, 쓰레기, 휴지, 더러운 걸레 등은 건물 내에 밤새 둘 수 없다. 문 밖 쓰레기통은 건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건물로부터 25 피트 이상의 거리에 쌓아 두어야 한다.

(3) 전기로 작동하는 비상구 조명 및 비상조명은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4) 촛불을 조명으로 사용하는 클럽, 식당건물에서는 제 2 장 21b 항을 준수한다.

(5) 직화 요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공 시설, 클럽, 스태바, 식당 등 식사장소에서도 화염을 이용한 요리는 금지된다. 손님의 식탁에서 직화 요리를 준비하는 직원은 가열된 알콜 사용 중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6) 상업 식당의 조리 장비는 적격 직원만이 조작한다. 장비를 사용 중일 때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7) 비상구 시설 (통로, 복도, 현관, 출입문, 계단, 경사진 곳 등)에서는 건물을 빠져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가구나 장식품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 비상구는 공중 사용이 목적이므로 막거나 잠그지 않는다.

(8) 극장 (영사실 내 어두운 장소에 있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 내에서의 안전에 관한 주의는 미 화재 방재청 표준 101에 의거한다.

3-3. 숙사

a. 개인에게 공병대의 부동산 기록상 숙사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서의 거주를 인가하지 않는다. 지상보다 낮은 지하 지역을 거주나 숙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1에 의거하여 제 2의 탈출로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b. 미 화재방재청 72, 101 과 연합소방규정 3-600-1에 따른 절대 최소요건으로, 내부배선된 연기 감지기를 장착한 인가된 화재 감지 시스템이 모든 숙사에서 요구된다. 오직 광전 방식 연기 감지기만이 숙사에 설치된다.

c. 연료 소모식 난방 장치, 건조기, 물 난방 장치, 스토브가 있는 숙사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공휴일 및 특별 행사

a. 공공 시설의 장식 목적으로 사용된 상업적 장식, 식물, 커튼, 깃발의 천, 인공적인 풍경, 나무, 꽃, 식탁보는 인가된 방화용 장식품으로 제한한다.

b. 친목회나 특별 행사 중에는 각별한 주의로 혼잡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느 모임에서도 사람의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복도나 비상구로 통하는 현관입구에서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c. 크리스마스 트리

(1) 모든 건물 내에서는 인공방염 처리된 트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는 모든 공공 시설에서는 필수적이다.

(2) 건물이나 공공 시설에 생목으로 진열할 때는 나무의 밑동을 45도 각도로 자르고 물에 적셔두어야 한다. 생목은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물에서 치워야 한다.

(3) 방화용 장식품만을 나무에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나무에 또는 화환의 장식에 촛불을 사용하지 못한다.

d. 어린이를 위한 파티를 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시설은 안전한 비상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참석 어린이가 50 명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면, 파티 장소에 대한 소방부서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다. 파티의 주최자는 적어도 5 일 전에 소방부서에 연락해 둔다.

3-5. 물자 적재

- a. 모든 물자 적재는 기술교본 (TM) 38-400, 저장 및 재료 취급 항목에 의거한다.
- b. 저장 물자와 지붕 밑 서까래, 조명등, 온방 고정장치 및 스프링쿨러 헤드의 간격을 적어도 18 인치로 유지한다. 물품은 방화문에서 3 피트 이내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창고로 접근하는 출입문을 막거나 자물쇠를 채우거나 용접해서 닫아두면 안 된다. 창고 및 보급창의 부대장은 스프링쿨러 시설로 보호 받는 창고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최고급 물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물자에 우선 순위를 두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건물에 다시 적재한다.
- c. 목재 적재 지역은 기술교본 743-200-1 및 미 화재방재청 표준을 따른다.
- d. 인화물질 저장은 미 화재방재청 표준 30,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규범을 따른다.

3-6. 계약업체 및 구내매점업자를 위한 화재 예방 조치

계약업체 및 구내매점업자는 다음을 포함한 본 규정을 따른다:

- a.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초래하는 흡연행위는 모든 지역, 건물, 장소에서 금지된다. 흡연물질은 흡연용으로 설계된 용기에 두어야 한다. 흡연은 계약업체에 의해 지정되고 인가된 흡연 구역에서만 허가된다.
- b. 매일 일과가 끝나기 전에 건물이나 그 지역의 부스러기들을 치우고 부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 c. 건물 내 혹은 근방에서의 열기구 사용은 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d. 응급 소화기의 준비는 청부업자의 책임이다. 적어도 두 개의 적절한 용량의 소화기를 각 작업장 별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 설치된 화재경보나 화재진압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소방대의 협조를 받는다.
- f. 모든 종업원들은 화재예방과 화재신고에 관하여 교육받는다.
- g. 모든 화재는 소방대에 보고된다.
- h. 용접 및 절단 작업은 별지 H에 의거한다.
- i. 계약업체는 소방대의 사전 인가 없이 상수도 또는 소화전을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못한다.

3-7. 기동훈련 및 야전훈련

- a. 총칙.

(1) 기동훈련 및 야전훈련중인 모든 부대는 방화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사람은 육군 규정 420-1 에 따라 각 기관 또는 활동단체의 건물 관리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훈련부대의 사령관은 기동훈련 방화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2) 훈련을 펼치기 전에 기관 및 활동 단체는 훈련기간 중에 사용하는 전등, 난방, 요리 및 기타 발열 기구에 대한 안전 수칙을 인원들에게 설명한다.

(3) 훈련전 지역 소방대와의 협조가 권장된다.

(4) 훈련을 하는 부대는 훈련 실시 이전에 모든 필요한 소화기, 히터, 부대 물자와 차량이 확보되고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막에는 최소한 두 개의 10 파운드짜리 ABC 형 소화기가 필요하다. 이 소화기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걸어놓아야 한다. 소화기들은 훈련부대가 준비하여야 한다.

(5) 각 천막에는 작동 가능한 광전자식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를 2 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천막에 필요한 연기 감지기는 미 화재방재청 표준 101,11 장에 의한 것이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전기식 히터가 사용되는 천막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감지기들은 히터로부터 최소한 10 자 이상 떨어진 곳에, 천막 윗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를 설치하는 위치에 대한 의문점은 지역 소방대장과 상의한다.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훈련부대가 준비한다.

(6) 새 히터나 연중 정기 점검을 받은 히터는 방부 코팅으로 보호되어 있다. 이 히터들은 처음 사용할 때, 방부제가 다 탈 때까지 연기를 하는데, 천막 내의 연기 감지기가 이 연기때문에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천막 안의 연기가 다 빠질 때까지 천막의 덮개를 세워 끝까지 접어 올려 놓는다.

(7) 오직 미 육군에서 인가한 통풍형 히터만 천막에서 사용할 수 있다.

b. 야전훈련 중 흡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한다.

(1)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흡연물질의 처리에 극도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옥외의 공간은 잡초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여송연, 담배꽂초 및 파이프 담뱃재를 처리해야 한다.

(2) 군용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시동이 걸려있는 중에 흡연을 금지한다.

(3) 화물을 실은 차량의 화물 칸이나 화물 저장 지역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의 흡연을 금지한다.

(4) 아영지역에는 꽂초통이 제공된다. 꽂초통은 매일 옹덩이에 비우고 흙으로 덮는다.

(5) 침대 또는 침낭 속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c. 모닥불을 피우려면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강한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 같은 위험한 상태일 때는 사령관은 이에 관련하여 모든 모닥불을 금지시킨다. 모닥불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취해야 한다.

(1) 그 지역과 주요한 상태의 위험평가를 마친 다음 안전한 모닥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그 장소로부터 직경 6 피트 둘레내의 지역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작은 구덩이를 파서 중앙에 불을 켜고 모닥불은 계속 작게 피우고 절대로 불이 커져서 나무, 통나무 또는 근처의 잡목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절대로 사람이 떠나서는 안된다.

(3) 의복이나 장비는 모닥불 위 또는 가까이에 걸어 두어서는 안된다.

(4) 모닥불을 떠나기 전에 숲에 물이 젖을 때 까지 뒤적이다. 불 피운 웅덩이는 나뭇잎, 잔가지 및 기타 타기 쉬운 물질이 없는 흙으로 적어도 6 인치의 두께로 덮어야 한다.

d. 사령관은 난방, 요리, 및 조명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을 확인한다.

(1) 작동, 검열, 정비에 익숙한 인원만이 조작할 것.

(2) 적절한 검열과 보수를 할 것.

(3) 모든 안전상의 주의를 따를 것.

(4) 모든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모든 장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것.

e.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이 적용된다.

(1) 천막용 난로, 조리용 레인지 및 기타 발열기구는 천막 또는 건물의 벽으로부터 18 인치 떨어져야 한다.

(2) 땅 또는 콘크리트바닥 이외의 표면에 설치할 때는 난로의 전면에서 18 인치, 측면과 후면에서 6 인치 늘린 철판조각 위에 차려야 한다. 난로와 바닥 사이 또는 기타 지지대 사이는 4 인치의 통풍 공간을 두어야 한다. 땅 표면에 설치할 때는 난로와 조리 장비의 모든 방향에서 최소한 18 인치 이상으로 늘려서 그 지역의 모든 가연성 물질을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3) 적당한 용기에 모래를 채우거나 적절한 유형의 소화기를 각각 작동 중인 천막 난로나 조리용 레인지에 접근이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4) 난로 연통은 이음개가 꼭 맞도록 하고 연통의 끝부분은 표준 지붕 연통구멍으로 넣는다. 장비의 기술교본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연료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면 스파크 방지기를 달아야 한다.

(5) 천막 내의 난로연통과 가연성 물질의 사이는 최소 18 인치를 유지해야 한다.

(6) 난방장비는 모든 통풍요소가 양호한 상태이고 완전 조립 상태가 아니면 작동할 수 없다. 무인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7) 난방 및 조리장비는 차량 내에서 급유 또는 작동을 하면 안된다.

(8) 난로는 건물에서나 차량에서 사용할 수 없다.

(9) 휘발유를 M1941 천막난로의 연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디젤이나 JP-8 만을 사용해야 한다.

(10) 서로 다른 종류의 연료를 혼합하면 안된다.

f. 액체 연료로 작동하는 조리 기구와 조명장비는 급유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취해야 한다.

(1) 액체 연료로 작동하는 장비나 랜턴은 천막, 건물, 및 차량 안 또는 기타 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좁은 공간 내에서 기름을 채우거나 비우는 행위, 그리고 급유 뚜껑을 느슨하게 닫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개방된 불이나 점화장치, 천막, 건물 또는 차량으로부터 50 피트 이내에서는 급유를 할 수 없다.

(3) 난로, 레인지, 또는 랜턴과 같은 액체 연료 장치는 끄고 (예를 들어 불편 없이 맨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냉각될 때까지 급유해서는 안된다. 급유 후에는 흘린 연료를 닦아 말려야 한다.

(4) 인화성 액체연료 급유지역의 인공 조명은 주유구로 부터 적어도 옆으로 20 피트 그리고 위로 4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차량을 제외하고 내부 연소 엔진이나 완전한 연료 통을 지닌 난방장치 또는 엔진 위에 달린 연료 통은 완전히 냉각될 때까지 급유하면 안된다. 흘린 연료를 깨끗이 닦고, 땅에 흘린 연료도 청소하고, 통 뚜껑도 꼭 조여 잠그고, 급유 통 뚜껑을 잠글 때까지 시동을 걸면 안된다.

(6) 냉각시키기 위하여 엔진을 멈출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급유절차를 따라야 한다. 표준 휘발유통에 급유파이프를 달고 사용해야 한다. 엔진이나 난방장치의 어느 부분에라도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 급유 작업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기름을 붓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위치에서 소화기를 들고 대기하면서 급유지점을 주시해야 한다.

g. 야전훈련기간에 사용하는 조명등과 화염 발생 장비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1) 가스등의 유리관과 전구는 벽과 천장을 포함하여 모든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한 6 인치 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등불장치를 매달 때는 매달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90 도로 흔들어 모든 지점을 통과하도록 공간을 조정해야 한다.

(3) 받침과 가스등이 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등은 받침대 또는 탁자에만 올려진다.

(4) 화염 발생 장비가 작동 중이거나 완전한 소화 또는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5) 연장 코드선을 등불이나 난방 장비에 사용할 때 꼬아서 연결하면 안되며 하나의 긴 코드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연장 코드선으로 연결할 수 없다.

(6) 가스등, 난로 및 기타 액체 연료 장치의 연료는 용기의 뚜껑을 꼭 조이고 천막, 건물, 차량 또는 주차지역으로부터 최소한 20 피트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7) 발전기, M-2 버너, 침수난로, 등등의 급유작업 후에 급유 파이프를 급유통에 두어서는 안된다.

h. 야전훈련 중 차량은 다음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1) 차량은 천막, 건물, 및 창고지역으로부터 10 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2)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목이 있는 지역에 정차할 때는 배기관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아니면 배기장치에서 가깝게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때 까지 사람이 떠나면 안되며 운전자는 배기열의 복사으로 잡초에 불이 붙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3)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차량의 하부나 주위를 철저히 검열하고 연료가 새는 곳을 찾아본다.

(4) 짐을 싣거나 내릴 때를 제외하고 차량을 소방도로나 화재 저지선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다.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소방도로나 화재 저지선에 정차했을 때는 차량에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한다.

i. 야전훈련 중 물자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적용한다.

(1) 전략상으로 허용될 때 물자 저장소는 잡초가 제일 적은 곳으로 선택해야 한다. 저장소로부터 반경 20 피트 내의 풀이나 덩불은 높이 2 인치 이하로 자르고 유지한다.

(2) 저장물의 높이는 6 피트, 폭은 10 피트, 그리고 길이는 20 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저장물의 끝과 끝 사이는 10 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저장물의 긴 변 쪽에 20 피트 폭의 소방도로를 유지해야 한다.

(3) 물 소화기 또는 ABC 형 분말 소화기를 매 6 개의 마른 저장물 사이에 하나씩 두어야 한다. 소화기는 소방도로에서 같은 지점 또는 근방에 매 기둥마다 걸어 두어야 한다.

(4) 유류 저장소는 엄격하게 FM 10-67, 작전 전구 내 석유 공급에 따라 설립되고 유지된다.

(5) 모든 저장소에 필요한 특별한 주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6) 저장소는 매일 철저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다.

(7) 용기는 별도로 쌓아두어야 한다. 인화성 액체가 담긴 용기는 뚜껑을 단단히 닫아 유류 저장소에 보관한다.

(8) 탄약은 해당 지시에 따라 격리된 지역에 엄격히 보관해야 한다.

j. 조명탄이나 연막 수류탄을 사용하였거나 투하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잔해물을 찾아서 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k. 그물과 풀잎을 포함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감시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과 장치는 다음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위장망은 어느 차량이든 차량의 배기장치, 난로 연통 또는 기타 정상 가동시 열이 가해지는 모든 표면으로부터 1 피트 이내에 설치하면 안된다. 이런 것들의 표면 근처에 있는 위장망은 붙들어 매어 안전하게 차려두어야 한다.

(2) 엔진을 위장한 장비는 모든 가연성 물체가 배기장치와 배기구에서 제거 후 검열을 마칠 때까지 가동할 수 없다.

(3) 위장망이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열을 시행한다.

l. 궤도차량, 벤 그리고 전기 또는 휘발유 동력 장비를 운반하는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휘발유 수송용 탱크가 달린 차량과 트레일러는 적절한 안전을 취하고 넘치지 않게 채운다, 휘발유 통 주변에는 충분한 통풍을 마련해야 한다.

m. 모든 건물 및 숙박 하는데 이용되는 장소는 광전자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숙소도 여기 포함된다. 숙박에 사용되는 천막은 각 최소한 2 개의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감지기를 일주일 단위로 검열를 받는다.

n. 소화기는 해당 지시문과 기술 교본에서 규정한대로 모든 건물과 차량에 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액체연료의 천막용 난로가 설치된 각 천막마다 2 개의 B 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소화기들은 각 단위 부대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o. 사령관은 각 아영지의 창고지역에 방화 보초를 세우고 기동훈련 건물 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화재 예방 수칙을 이행하고 강행하여야 한다. 충분한 방화 보초를 두어 전 지역을 계속 감시하도록 한다.

p. 화재 보고 시설. 훈련 중 통신 장교는 소방대에 화재 및 비상경보의 송신을 위하여 확실한 주파수를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q. 화재 경보 장치는 모든 부대, 천막, 유류 저장소, 및 탄약 저장소에 설치한다. 경보 장치는 크고 특색있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경보가 발생하면, 전 지역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또는 수동 싸이렌을 이용할 수 있다면 유류 저장소, 탄약 저장소 그리고 야적장에 설치해야 한다.

r. 소방차와 의료차량. 화재 또는 긴급 의료 사고 시에는 소방 차량과 의료 차량에게 모든 도로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s. 별지 E 에 있는 도표를 보면 기동훈련 중에 사용하는 천막의 설치를 시설 관리대 주둔지 또는 전문 소방대가 없는 벽지에 따라 차등 명시하였다. 공간의 치수는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이다. 건물과 천막의 거리는 최소한 4 피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A

관련근거

모든 인용 관련근거는 현재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나, 규정, 규범, 표준 및 절차는 정기적으로 최신화되므로, 가장 최신 판본이 관련근거로 효력을 가진다.

제 1 절

필요 간행물

육군규정 (AR) 355-15 정보통제체계 관리

육군규정 385-10 안전, 미 육군 안전 프로그램

국방성 (DA) 팜플렛 (PAM) 385-64 안전, 탄약 및 폭발물 안전 표준

육군규정 420-1 시설 공학, 미 육군 시설 관리

육군규정 700-68 가압 가스와 가스 실린더의 저장과 사용

국방성 6055.9-STD 국방성 탄약 및 폭발물 안전 표준

공학교본 (EM) 385-1-1 미 공병부대 (USACE) 안전 및 건강 요건

주한 미 육군 규정 700-3 재래식 무기

야전교범 10-67 작전 전구 내 석유 자원 지원

연합소방규정 (UFC) 3-600-01 설계: 건물 화재 방재 공학

미 화재방재청(NFPA) 규범

미 화재방재청 표준

29 미 연방법령 (CFR) 직업 안전 위생 규정 (미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OSHA) 기준)

기술교본 (TB) 5-4200-200-10 휴대용 소화기

기술교본 3-250 화학재료 및 위험 화학약품의 저장, 수송, 취급 및 처리

기술교본 743-200-1 저장 및 재료 취급

제 2 절 관련 간행물

육군규정 380-19 정보 시스템 보안

육군규정 420-1, 시설 공병

기술교본 5-315 작전 전구 내 소화 및 구조 절차

기술교본 5-620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학적, 구조적 요소의 유지보수 공학

기술교본 5-640 레인지, 구이용 오븐, 버너 등 요리 장비

기술교본 5-650 중앙 보일러 공장

기술교본 9-1300-214 군용 폭발물

기술교본 38-400 저장 및 재료 취급 연합 복무 매뉴얼 (JSM)

기술교본 38-410 저장 및 위험 물질 취급

주한미군 (USFK) 팜플렛 200-1 환경 조절 표준

주한미군 규정 10-2 시설 관리 및 기지 운용

별지 B

기관/부서의 화재 계획 지침

1. 각 시설관리본부 (IMCOM) 주둔지 시설마다 긴급화재계획이 요구된다.
2. 모든 전화기에는 소방대의 긴급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 a. 긴급화재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건물번호 혹은 기타 식별가능한 명칭 및 부대명.
 - (2) 건물 내 인원에게 경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 (3) 수동식 화재경보장치의 위치와 경보장치가 자동으로 소방대로 송신하는지 여부.
 - (4) 소방대로 화재신고하는 방법.
 - (5) 화재신고 전화 번호.
 - b.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의 긴급대피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중요하거나 예민한 재산을 건물로부터 철거할 시의 우선 순위
 - (2) 대피통로 및 화재감시원 배치. 해당 감시요원은:
 - (a) 거주자에게 비상구를 알려준다.
 - (b) 대피 중 창문이나 출입문을 닫도록 한다.
 - (c)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접선할 인원을 지정한다.
 - (d) 공공 시설 (클럽, 극장, 도서관, 간이 식당 등) 의 직원들이 대피 호송자 및 감시자로 지정된다. (상세한 사항은 본 팜플렛의 제 3 장 2 항을 참조)

별지 C

기관/부서 화재 예방 사령부 검열 프로그램 점검표

1. 사령부 차원 요건

공란 공란 공란

*a. 사령부는 적극적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휘하 전 단체 및 시설에 시행 중인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1 항)

*b. 사령관, 시설/건물 관리자 및 감독자는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브리핑 간의 주입 강조를 통해 모든 요원이 화재예방에 대해 지식을 가지도록 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1 항)

c. 사령관은 부대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부서 화재 예방 노력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했는가? (선택)

2. 부대 차원 요건

공란 공란 공란

*a. 각 부서/단체는 화재예방, 보고, 대피 계획 (예규) 를 각 부서 또는 단체의 화재예방 요구 수준에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별지 B 에 명기된 요건에 맞추어 계획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c 항)

b. 화재 예방, 보고, 대피 계획 예규를 시설 게시판 혹은 특별 작전 지역에 눈에 잘 띄게 배치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c 항)

c. 시설의 개략 및 대피 계획을 보여주는 약도를 만들어 복잡한 각 층 계획과 함께 게시했는가? (일상 시설에서의 간단한 각 층 계획은 게시가 필수적이지 않음) (주한 미 육군 팜플렛 제 1 장 4c 항)

d. 모든 자가 완수된 건축, 수정, 변경이 국방성 양식 4283 시설 공학 작업 요청을 통해 시설 관리대 (DPW) 의 인가를 먼저 받았는가? (모든 자가 프로젝트는 소방부서에 의해 검토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한 미 육군 팜플렛 제 2 장 6k 항)

e. 계획은 사령관이 부대를 관할함에 있어, 취침 중 인원들이 화재 시 신속하게 일어나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j 항)

f. 부대는 작전 행동 및 야전 훈련 시에 기동 대피 조종자를 지정했는가? 해당 조종자는 명기된 요건을 충족하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3 장 28a1 항)

g. 긴급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인원들이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했는가? (기지 소방부서와 지역 화재 대피 요건 결정을 상의함)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k 항)

- (1) 병원 (각 교대조마다 4 회)
- (2) 막사/기숙사 (인원들이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정기적으로)
- (3) 사무소, 사무실, 상업용 건물, 호텔, 집회소, 고층 건물, 아파트, 건물, 교정시설, 산업시설 (피고용자는 정기적으로 화재 훈련 절차를 교육받음)

h. 고장난 화재경보기, 감지기, 억압 시스템에 대해 시설 관리대 혹은 화재 및 긴급 서비스 사무실에 수리 요청 보고가 이루어지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d 항)

i. 접착형 국방성 이름표 179 (소방/경찰/앰블런스 전화번호 전사) 가 각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가? (선택)

3. 시설 관리자 요건

공란 공란 공란

*a. 시설/건물 관리자 그리고/혹은 (중대 사령관이 한 개 이상의 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그 대리자는 서면으로 지정되었는가? 그리고 지정 서식 사본이 시설 소방대장에게 제공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a 항)

b. 시설/건물 관리자는 귀국 예정일 최소 한 달전에 교체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a 항)

c. 시설/건물 관리자는 화재 및 긴급 서비스 부서에서 주관하는 화재 예방 안내 훈련에 참석하였으며, 검열 중 훈련 인증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b 항)

*d. 시설/건물 관리자는 월간으로 미 8 군 팜플렛 420-1 별지 C 제 3 장의 체크항목을 안내서로 활용하여 업무 공간 및 소화기에 대한 화재 검열을 실시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b 항)

e. 월간 화재 검열 중 식별된 모든 위험 요소는 그에 행해진 수정 조치와 함께 문서화되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b 항)

f. 시설/건물 관리자 및 일등 상사는 막사 생활 지역의 일상 검열을 시행하여, 화재 안전 표준이 완수되도록 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b 항)

*g. 시설/건물 관리자는 과거 화재 검열, 화재 및 인명 구조 관련 작업 요청, 시행된 대피 훈련 및 화재 예방 훈련을 내용으로 삼는 화재 예방 서류철을 만들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d 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h. 시설/건물 관리자는 피고용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책임, 보고, 대피 및 긴급 소화 절차에 대해서 훈련되고 숙지하도록 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e 항)

_____	_____	_____
-------	-------	-------

*i. 시설/건물 관리자는 사령관 혹은 감독자에게 본 규정의 조항이나 과실 조항에 저촉되는 결과로서의 화재 원인을 제공한 인원을 보고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f 항)

_____	_____	_____
-------	-------	-------

*j. 시설/건물 관리자는 허위 경보에 책임이 있거나 소화기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자를 보고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f 항)

_____	_____	_____
-------	-------	-------

k. 사령관 및 감독관은 해당 개인에 대해 적절한 처벌조치를 취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f 항)

_____	_____	_____
-------	-------	-------

l. 시설/건물 관리자는 소방부서에 화재 경보 혹은 감지 시스템의 일상 사용에 앞서 인가를 요청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g 항)

_____	_____	_____
-------	-------	-------

m. 시설/건물 관리자는 긴급 연락명 및 연락 전화번호를 모든 책임 하 건물의 주 출입구에 게시했는가? (24 시간 개방하는 시설에는 본 정보를 게시할 필요가 없음)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h 항)

_____	_____	_____
-------	-------	-------

n. 시설/건물 관리자는 책임 하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이고, 어느 방향에서도 번호가 보이도록 했는가? (주한 미 육군 팜플렛 420-1 제 1 장 4i 항)

_____	_____	_____
-------	-------	-------

별지 D

기관/부서 일반 화재 예방 검사 항목

1. 소방 규정	<u>예</u>	<u>아니오</u>
a. 저장소		
(1) 청소부의 옷장과 창고는 깔끔하고 잘 정돈되었는가?	_____	_____
(2) 천장 속, 좁은 공간 및 가연성 계단 밑에서 저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_____	_____
(3) 먼지 닦기, 왁스 칠 또는 광택 내는 데 사용한 걸레는 바닥에서 적어도 6 인치 높이에 걸어 두었는가?	_____	_____
(4) 걸레는 철제뚜껑이 달린 철제용기에 보관 하는가?	_____	_____
(5) 모든 소화기는 작동하는가?	_____	_____
b. 인화성 물질 저장소		
(1) 모든 인화성 물질의 저장지역은 청결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가?	_____	_____
(2) 인화성 물질 저장지역은 흡연과 불꽃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는가?	_____	_____
(3) 인화성 액체의 취급과 보관을 위해 인가된 용기만 사용하는가?	_____	_____
(4) 인화성 물질을 라벨이 붙어 있는 철제 락커에 보관하고 오직 인화성 물질보관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_____	_____
(5) 인화성 물질 저장 락커는 소방대원으로부터 서면상의 허가를 받았는가?	_____	_____
(6) 모든 소화기는 작동하는가?	_____	_____
c. 폐기물 용기		
(1) 비연소성용기 (철사 그물은 안됨) 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_____	_____
(2) 모든 폐기물은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비우는가?	_____	_____

	예	아니 오
d. 흡연		
(1) 인가된 모든 흡연장소에 담뱃재와 궤초를 담을 수 있는 깡통이 충분하게 준비 되어 있는가?	_____	_____
(2) 안전한 흡연을 실행하고 있는가?	_____	_____
(3) 모든 궤초 통은 물에 흠뻑 적시어 외부 쓰레기 처리장에 적어도 하루에 한번 비우고 있는가?	_____	_____
(4) 위험지역 내에서의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가?	_____	_____
e. 비상구		
(1) 모든 비상구의 작동은 양호한가?	_____	_____
(2) 모든 비상구와 비상구 통로에는 방해물이 없는가?	_____	_____
(3) 모든 비상구는 시설에 사람이 있을 시에 열림 상태로 있는가?	_____	_____
f. 소화기		
(1) 모든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적절한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가?	_____	_____
(2) 소화기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장애물이 없는가?	_____	_____
(3) 배속된 직원들은 제공된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_____	_____
g. 전기		
(1) 모든 배선에 결함, 마모, 배선간의 꼬임 또는 기타 손상이 없는가?	_____	_____
(2) 배선은 못을 박거나 벽, 천장, 및 바닥에 부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하였는가?	_____	_____
(3) 모든 전기 출력, 스위치 및 접합박스에 보호 덮개가 있는가?	_____	_____
(4) 규격 퓨즈/회로 차단기를 설치하였는가?	_____	_____

예	아니오
---	-----

(5) 퓨즈/회로 차단기 및 스위치 박스는 닫혀있고 방해물이 없는가?

_____	_____
-------	-------

(6) 사용하고 있지 않은 모든 전기장비의 플러그는 뽑아 두었는가?

_____	_____
-------	-------

(7) 모든 침실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_____	_____
-------	-------

h. 직원 숙지 사항

(1) 모든 직원들은 화재신고 방법과 시설물 경보장치의 작동법을 알고 있는가?

_____	_____
-------	-------

(2) 모든 종업원들은 올바른 대피절차를 알고 있는가?

_____	_____
-------	-------

(3) 모든 종업원들은 시설물내의 모든 소화기와 비상구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_____	_____
-------	-------

2. 특수장소의 화재 예방수칙

a. 차고 및 차량 수리소.

(1) 자연발화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름걸레와 기타 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철제뚜껑이 달린 철제용기를 사용하는가?

_____	_____
-------	-------

(2) 모든 폐기물 용기는 각 수리소의 외벽으로부터 적어도 10 피트에 위치한 철제용기에 비우는가?

_____	_____
-------	-------

(3) 기름이 배인 바닥과 파인 곳은 인가된 합성세제로 철저히 청소하는가?

_____	_____
-------	-------

(4) 불꽃 또는 전리를 이용한 난방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가?

_____	_____
-------	-------

(5) 휘발유, 세탁용 솔벤트 및 기타 인화성 액체를 담은 인가된 철제용기가 준비 되어 있는가?

_____	_____
-------	-------

(6) 공급용 인화성 액체의 용기는 방화용 저장실이나 공인된 철제 캐비닛 속에 있으며 옥외에 있는가?

_____	_____
-------	-------

(7) 작업장내에서 차량의 급유를 금지하고 있는가?

_____	_____
-------	-------

(8) 용접 또는 불꽃형태의 철제 절단 작업을, 주 작업장으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격리실이나 영역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_____	_____
-------	-------

예 아니오

b. 극장.

(1) 영사실에는 두 개의 비상구가 비치 되어있으며 하나는 직접 건물 밖으로 통하도록 마련되었는가?

(2) 영사실의 내부 마감재료는 철판 (정확한 이음새) 이나 이와 동등한 방화용인가?

(3) 벽에 있는 모든 개방구는 자동과 수동의 겸용으로 퓨즈 장치를 사용하여 영사구와 출입문이 자동 폐쇄 되는가?

(4) 영사실에 관중석의 전등관리 스위치가 설치되어있어 화재 또는 기타 긴급 시에 영사기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가?

(5) 영사기 통풍관의 연결점마다 양철 나사못, 리베트 또는 볼트로 단단히 매었는가? 그 통풍관은 계속 천정과 지부를 통하여 옥외로 나와있는가?

(6) 영사실의 사영은 극장 책임장교가 인가한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7) 영사기 기사는 영사기 제작자의 교본에 있는 지침안내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8) 화재 비상구로 지정된 모든 출입문은 상영 중에 잠그지 않았으며 빗장걸이 장치가 필요한 모든 출입문에는 패닉-하드웨어가 설치 되어 있는가?

(9) 비상구로 사용하는 계단 참, 계단, 또는 경사로에 필요한 충분한 조명과 난간이 마련 되 있는가?

(10) 모든 비상구는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있을 시에 열림 상태로 되어 있는가? 또한 대피 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가?

(11) 폐기물통은 정기적으로 비워 쓰레기와 폐기물이 지나치게 쌓이는 것을 막고 있는가?

(12) 특별히 정해진 직원으로 하여금 폐업시간의 화재 검열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검열은 정상적인 폐업시간 후, 1 시간 이내에 소방대로 보고하는가?

예 아니오

c. 막사 및 숙사

- (1) 정리 정돈과 청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_____
- (2) 쓰레기와 폐물철리를 위하여 철제 뚜껑이 준비되어 있으며 매일매일 비우는가? _____
- (3) 옥외의 폐기물 용기는 건물로부터 적어도 10 피트 떨어져 있는가? _____
- (4) 다중-출력 전기 소켓 및 다중-출력 연장 코트선의 총 와트가 최대 660 와트로 한정되어 있는가? _____
- (5) 다중-출력 전기 소켓과 다중-출력 연장코드선을 함께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_____
- (6) 휘발유 또는 기타 세탁용 솔벤트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액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_____
- (7) 모든 전기구는 인가된 제품인가? 제작사의 지침서를 따라 설치하였으며 안전하게 작동 하는가? _____
- (8) 침대에서는 흡연금지라는 표지를 붙이거나 다른 형식으로 알리고 있는가? _____
- (9) 오일이나 그리스가 묻은 옷을 옷장이나 찬장 속에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한 적이 있는가? _____
- (10) 모든 거주자들은 화재경보통지, 응급 화재 진압 장비의 사용절차 및 대피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_____
- (11) 개인 침실에서의 요리를 금지하고 요리는 지정된 주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_____
- (12) 막사, 사병 및 장교의 단독숙소의 모든 침실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었으며 항상 작동을 유지하고 있는가? _____
- (13) 정리 정돈 담당 직원은 그들의 작업지역을 단단히 감시하여 전기, 불이나 위험충격 그리고 지나치게 쌓인 종이와 마분지를 제거하는가? _____
- (14) 세탁기나 건조기의 작동 불능 또는 결함은 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공병대에 보고하는가? _____

	예	아니오
(15)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훈련은 실행하기 전에 소방대와 협의를 하는가?	_____	_____
d. 참고.		
(1) 소방장비의 조작이 허용되도록 복도의 폭이 충분한가?	_____	_____
(2) 적재더미와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이가 18 인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_____	_____
(3) 쌓은 물건으로 막힌 출입구는 분명하게 출입구 외부에 12 인치의 글자로 “이 출입구는 폐쇄하였음”이라고 써붙였는가? 이러한 출입구의 폐쇄는 소방대의 인가를 받았는가?	_____	_____
(4) 모든 소화기의 위치는 명확하게 표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급 소화장비가임시로 위치 이동된 상황일 때는 휴대용 소화기의 받침대를 준비해 놓았는가?	_____	_____
(5) 옥외지역의 흡연은 지정된 장소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_____	_____
e. 클럽 및 기타 오락 시설.		
(1) 가연성 건물 안에 서로 연결된 넓은 지역은 기능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화재지역이 20,000 평방피트 (10,000 피트가 바람직하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된 공간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비연소성의 방화벽이 있는가?	_____	_____
(2) 가연성 천장내의 공간은 설계도에 따라 3,000 에서 5,000 평방 피트로 분할하여 비연소성의 통풍차단 벽이 있는가?	_____	_____
(3) 내벽 및 천장표면은 비연소성의 재료인가?	_____	_____
(4) 기존의 내장마감재를 비연소성 재료로 교체하고자 할 때 장기간으로 지연되면 기존의 표면에 효력 있는 방염처리를 하였는가? 방염처리는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다시 적용하였는가?	_____	_____
(5) 전기 배선 고정품, 기구 및 관련된 장비는 미국전기법령과 일치하는가?	_____	_____

	예	아니오
(6) 난방 및 요리기구는 제 7 항과 8 항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식당시설물과 일치 하는가?	_____	_____
(7) 튀김냄비, 철판석쇠 및 후드 같은 기구가 자동소화장치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_____	_____
(8) 가구, 장식막, 커튼 및 그와 비슷한 장식품은 비연소성 물질로 만들어 졌는가?	_____	_____
(9)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는 곳에 소방대로 경보를 송신하는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계획은 되었는가?	_____	_____
(10) 모든 종업원들은 화재예방의 책임, 화재시 따라야 할 절차, 경보전달 및 응급 화 재 진압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교육되었는가?	_____	_____
(11) 쓰레기, 종이수건, 담배꽂초 그리고 다른 유사한 가연성 쓰레기에 쓰이는 쓰레기통이 있으며 자동폐쇄 뚜껑이 있는가?	_____	_____
(12) 폐기물과 쓰레기통은 간간히 그리고 휴업시간에 건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있는 쓰레기 처리장에다 비우는가?	_____	_____
(13) 흡연물질 처리에 적절한 용기를 준비 하였는가?	_____	_____
(14) 화재예방과 흡연 주의공고를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였는가?	_____	_____
(15) 모든 비상구는 일과시간에는 잠그지 않고 걸지 않았으며 비상구 접근복도/현파에는 모든 장애물이 치워져 있는가?	_____	_____
(16) 음식 담당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리 기구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자릴를 비우지 않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는가?	_____	_____
(17) 관리직 직원은 일과를 마친 시간과 특별히 주요 사교행사 후에는 전체적인 검열을 수행한다:	_____	_____
(a) 소파와 의자쿠션 그리고 담배, 종이수건과 기타 쓰레기를 담은 통에 화재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 하는가?	_____	_____
(b) 자동판매기를 포함하여 일과 후 필수적인 정비를 제외하고 (탁자와 무대전등은 포함되지 않음)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아 두었는가?	_____	_____

	예	아니오
(c) 불꽃은 내는 열기구와 모든 요리기구의 안전한 상태, 플러그를 뽑거나 소화하는 것을 확인 하는가?	_____	_____
(18) 관리인은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친 후 1 시간 이내에 일과종료 검열을 소방대에 보고하는가?	_____	_____
f. 유류용 난방기.		
(1) 난방기에서 사방 6 인치가 넓은 금속판 기름받이가 있는가?	_____	_____
(2) 기구의 기화기는 같은 제작사의 것 또는 기능위 특성이 동등한 것인가?	_____	_____
(3) 통제 밸브는 기화기와 연료 공급원 사이에 설치되었는가?	_____	_____
(4) 설치된 난방기는 완전하게 수평인가?	_____	_____
(5) 난방기와 가까운 연소성 벽 또는 칸막이 (난방기의 반경 6 피트이내의 연통포함) 사이에 36 인치의 간격을 두고 있는가?	_____	_____
(6) 36 인치 이하로 그러나 12 인치보다는 낮지 않게 간격을 줄였을 때 방화막은 가까운 벽이나, 칸막이 사이에 1 인치의 통풍공간을 두고 있는가?	_____	_____
(7) 연통 안에 설치된 기압조절기는 자유롭게 작동하는가?	_____	_____
(8) 모든 연통 부분은 금속 나사못이나 리베트로 서로 안전하게 죄었는가?	_____	_____
(9) 연통이 천장 공간 또는 속이 빈 칸막이가 통과하는 위치에 이중 금속 통풍골목이 있는가?	_____	_____
(10) 연통의 끝부분이 지붕 용마루 위로 3 피트 뺀채 있는가?	_____	_____
(11) 바람을 아래로 빨아 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통 꼭대기에 굴뚝 갓을 설치 하였는가?	_____	_____
(12) 난방기의 조작과 서비스는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받은 책임 있는 사감이 맡고 있는가?	_____	_____

	<u>예</u>	<u>아니오</u>
(13) 난방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제작사의 추천과 똑 같은 것, 아니면 동등한 것인가?	_____	_____
(14) 공급하는 연료에는 물이나 침전물이 없는가?	_____	_____
(15) 연료공급탱크에는 믿을만한 공기통풍장치가 설치 되었는가?	_____	_____
(16) 연료공급탱크에는 믿을만한 공기통풍장치가 설치 되었는가?	_____	_____
(17) 연통과 난방기 부품은 그을음과 기름때를 매주 또는 필요에 따라 빈번히 청소를 하는가?	_____	_____
(18) 재급유하거나 재점화하기 전에 난로를 냉각시키는가?	_____	_____
(19) 연료통은 알맞는 색을 (휘발유-빨강, 디젤은-노랑) 칠하고 양국어로 표시하였는가?	_____	_____
(20) 급유 통은 옥외에 보관하는가?	_____	_____

별지 E
방화 상 천막 설치 간격

1. 정예 소방대가 있는 시설관리본부 주둔지 혹은 주한 미 육군 주둔지 인근 지역에서 부대 천막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작은 천막 (한면의 길이가 16 피트 이내) 간격은 8 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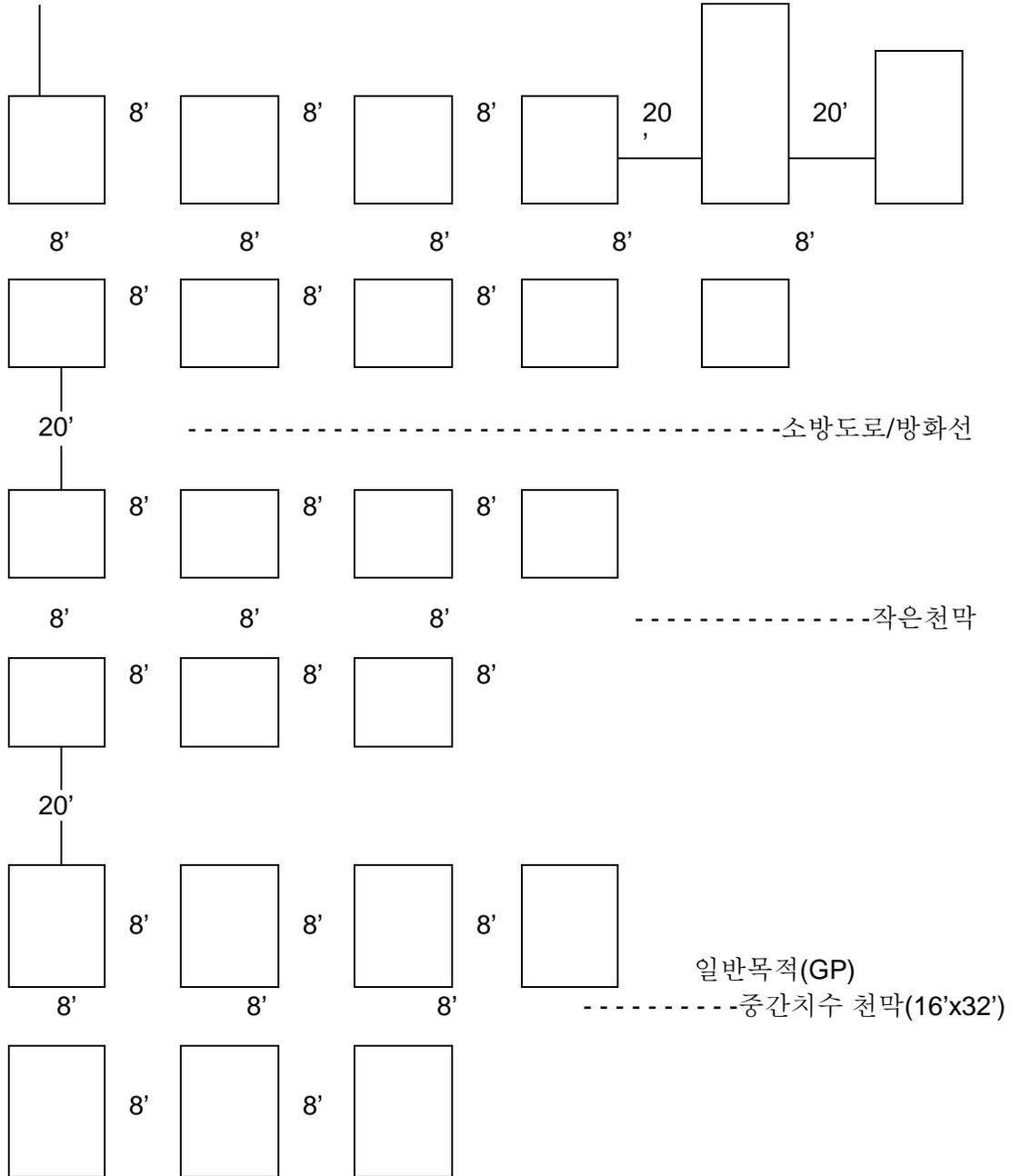


도표 E-1 정예 소방대 존재시 8 피트 간격의 소형 천막 배치

2. 정예소방대를 이용할 수 없는 외지에서 천막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작은 천막 (한면의 길이가 16 피트 이내) 간격은 8 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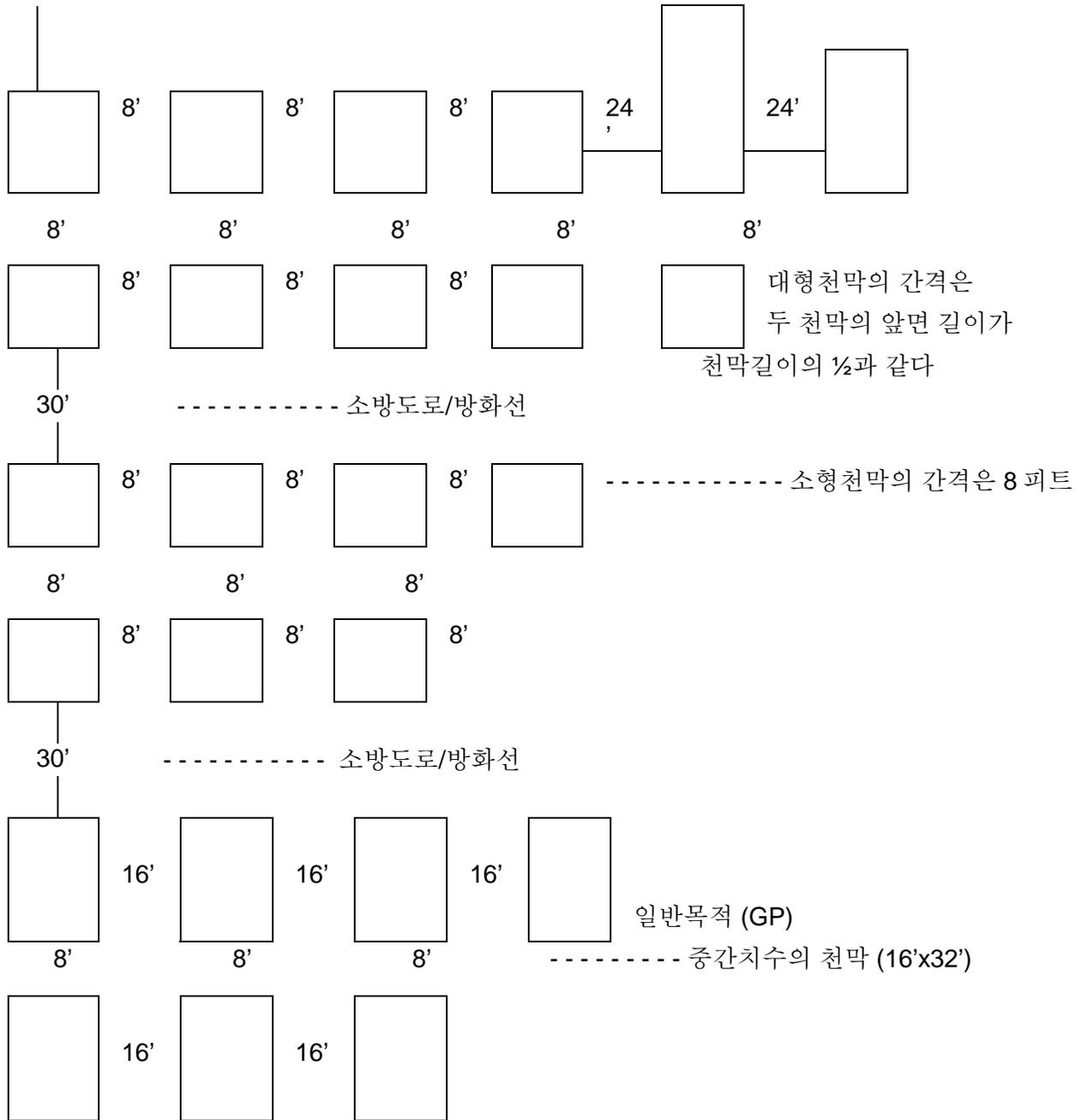


도표 E-2. 정예 소방대 부재시 8 피트 간격의 소형 천막 배치

별지 F

주한미군 소방대/화재 신고 전화번호 (2008년 1월 1일 기준)
긴급 화재 신고 번호

소방대		부대 내 긴급신고 번호			외부에서의 신고 번호		
부대명	지역	소방대	응급실	현병대	소방대	응급실	현병대
캠프 케이시	동두천	911	911	911	0505 730-5906	0505 730-5906	0505 730-5906
위리어 베이스	문산리	911/ 734-8391	911/734-8618	911	0505 734-8391	0505 734-8618/ 0505 730-5906	0505 730-5906
캠프 보니화스	공동경비구역/ 환문점	911/ 734-8546	911/734-8618	911	0505 734-8546	0505 734-8618 0505 730-5906	0505 730-5906
캠프 레드클라우드	의정부	911	911/732-7379	911/732-6693	0505 732-9117	0505 732-7379	0505 732-6693
캠프 스탠리 (2)	성산동	911	911/732-5621	911/732-5319	0505 732-9117	0505 732-5621	0505 732-5319/ 0505 732-5310
용산	서울	117/911	116/ 737-6132/3505	110/ 724-4258/3004	0505 738-0117	0505 738-0117/ 0505 723-1116	0505 724-4258
한남 마을	서울	117/911	117/741-6300	110/723-9131	0505 738-0117	0505 737-5545	0505 723-9131
K-16	성남시	117/911	741-6300	117/911	0505 738-0117	0505 738-0117/ 0505 741-6300	0505 738-0117
캠프마켓	부평/인천	117/911	116	117/911	0505 738-0117	0505 737-6132 032-509-5600 (세림 병원)	0505 738-0117
캠프 험프리	평택	911	911	911	0505 753-7911	0505 753-7911	0505 753-7911
캠프 이글	홍성	911	911	911	0505 721-2911	0505 721-2911	0505 721-2911
캠프 룡	원주	911	911	911	0505 721-2911	0505 721-2911	0505 721-2911

소방대		부대 내 긴급신고 번호			외부에서의 신고 번호		
부대명	지역	소방대	부대명	지역	소방대	부대명	지역
캠프 워커	대구	911	911	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캠프 헨리	대구	911	911	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캠프 캐롤	왜관	911	911	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부산 창고 시설	부산	911	911	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0505 764-5911
오산 공군기지	송탄	911	911	911	031 661-9111	031 661-9111	031 661-9111
군산 공군기지	군산	911	911	911	0505 782-0911/4471	0505 782-0911/063 470-0911	0505 782-0911/063 470-0911
진해 해군기지	진해	110/117	110/116	110/762-5399	0505 762-5110/5117	0505 762-5110/5116	0505 762-110/5399

별지 G

사격장 및 삼림 화재 예방 및 보호

1. 방침과 절차

a. 훈련을 실시 중인 단위 부대는 야전훈련 기간 중 화재진압에 충분한 소화기, 빗자루와 삽이 준비되도록 한다.

b. 담배는 들판을 걷어치우고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버릴 수 없다. 타 버린 성냥개비도 완전 소화 및 냉각될 때까지 버릴 수 없다. 담배를 차량에서 밖으로 던져 버릴 수 없다.

c. 풀밭이나 나무가 있는 지역의 흡연 표지는 즉시 소방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삼림화재의 위험 종류

a. 화재 위험 1: 작은 불시로 불이 즉시 붙지 않을 때. 조명탄, 수류탄 및 불꽃 같이 더욱 강렬한 열의 근원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개방된 풀밭의 화재는 쉽게 확산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불뚱에 의한 위험은 그리 많지 않다.

b. 화재 위험 2: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뜻하지 않은 원인에서 시작된다. 불은 신속히 확산되고 근거리 불뚱이 튀는 것이 보통이다. 불길이 거세져 통제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c. 화재 위험 3: 불이 지속적으로 점화되면 거의 모든 원인에서 쉽게 화재가 시작된다. 불은 신속하게 확산되고 근거리 불뚱이 튀는 것이 보통이다. 불길이 거세어져 통제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d. 화재 위험 4: 여러 원인으로 인해 쉽게 불이 붙으면, 신속한 확산으로 불길의 강도가 올라간다. 불뚱에 의한 위험이 상존한다.

e. 화재 위험 5: 불이 신속하게 점화되어, 급격히 확산되고, 강렬하게 타는 화재는 작은 불이라도 매우 위험하다. 화재위험 4보다 더 작은 불에서 시작해도 더 빨리 불길이 커진다. 대형화재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기후의 변화 또는 연소물 공급이 감소할 때까지 수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3. 화재 위험 1 과 2 의 진행 중 제한사항.

주의: 화재 위험 상황에 대하여 주둔지 소방 대장에게 연락한다.

a. 연막 수류탄, 조명탄 및 모의장치는 극도의 위험이 있으며 비가 온 후라도 쉽게 나무와 잡초에 화재를 일으킨다. 인화성이 높은 잡초와 나뭇잎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말거나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위의 장치들을 사용시 주위를 깨끗이 치워야 하고 책임자는 모든 장치를 면밀히 감시하여 모두 완전 연소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b. 뜨거운 것이나 기타 개방된 불꽃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사용 지역 3 피트 내에서 모든 인화성 물질을 치워야 하며 불은 버리기 전에 물로 적시고 흠으로 덮어 완전히 꺼야 한다. 불을 드럼통 안에서나 개방된 지역에서 연소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c. 쓰레기, 부스러기, 낙엽, 솔잎, 잡초 등의 소각 또는 영내의 특정 지역 소각은 소방대가 수행하는 통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d. 모든 성냥, 담배, 켄들, 담뱃재를 버리기 전에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4. 모든 화재 위험 3의 진행 중 제한사항:

a. 모든 필요한 사항은 위의 c항을 적용한다.

b. 단위 부대가 계획한 불꽃놀이, 불꽃 제조, 또는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화재라도 지정된 단위 부대, 사용 장소, 그리고 요구되는 활동을 준비하여 소방대에 고지한다.

5. 화재 위험 4와 5의 진행 중 제한 사항:

a. 모든 필요한 사항은 위의 c항과 d항을 적용한다.

b. 어느 것이나 잠재적으로 화재의 발생이 있는, 즉 예광탄, 폭발물, 의장장치 폭탄, 모의장치, 경고탄, 조명탄, 공포탄 (M16 제외) 등은 사용하면 안 된다. 예외: 필수, 특별 사격훈련의 실시는 산림청과 소방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는 소방장비와 인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

c. 개방된 불은 어떤 종류도 허락되지 않는다.

6. 화재 시 조치

a. 화재를 발견하는 즉시 화재 근처 모든 단위부대는 교육을 멈추고 불을 끄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사격장과 교육장의 화재를 발견하면 사격장 관리 장교와 소방대에 보고한다.

b.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격장 관리장교의 허가없이 개인이나 부대가 화재 지역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c. 화재를 신고한 부대는 화재진압부대를 현장까지 안내하고 산림청장 또는 그 권한 대행자가 복귀를 명할 때까지 현장에 남는다.

7. 소화 작업.

a. 부대 소방대장이나 그 권한 대행자는 근처 요원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군대의 추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b. 상호지원협정 하에서 잘 교육된 전문직 산림화재진압요원과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별지 H

용접, 절단 및 낫 땀질 작업 점검표

	예	아니오
1. 취득:	_____	_____
a. 인가된 장비만 사용하는가?	_____	_____
b. 보호복과 장비는 설정된 요건에 맞거나 더 우수한가?	_____	_____
c. 육군 시설물에 용접, 절단 및 낫 땀질 작업을 할 때 직업 안전건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업체에 알려 주었는가?	_____	_____
2. 작업상의 주의사항:		
a. 아세틸렌 가스 실린더는 사용할 때와 보관할 때 똑바로 세워 두는가?	_____	_____
b.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장시간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취급자가 자리를 비울 동안 토치로 공급하는 연료가스와 산소 공급을 잠그는가?	_____	_____
c. 콘크리트 바닥에서 용접할 때 콘크리트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용접공은 인지하고 있는가?	_____	_____
d. 용접공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적절한 추락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_____	_____
e. 용접작업 감독관은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장치의 작동을 확인하는가?	_____	_____
f.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호스의 손상을 육안으로 점검하는가?	_____	_____
g. 무심코 남겨진 뜨거운 물건에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표지가 붙어있는가?	_____	_____
h.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29 CFR 1910.146 이나 이와 동등한 한국 표준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는가?	_____	_____
3. 시설 (내부지역):		
a. 35 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였는가?	_____	_____
b. 작업자와 용접 장소의 근방에 있는 기타 사람들은 용접 광선과 불뚱으로부터 보호된 비가연성이나 방염막을 사용하는가?	_____	_____
c. 벽과 막 그리고 연식 열 및 스파크 방어벽의 마감재는 반사가 제한된 것인가?	_____	_____

예 아니오

d. 용접장소에 들어가 무심코 용접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해 놓았는가?

e. 젖은 바닥이나 젖은 모래를 깔아 놓은 곳은 장비에 적절한 접지선을 하고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를 설정하였는가?

f. 충분히 충전되고 올바르게 작동되며 임무에 알맞은 소화기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가?

4. 시설 (옥외 지역):

a. 용접 작업 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빗줄을 치거나 장애물로 차단하여 격리하는가?

b. 옥외의 용접작업은 용접작업을 진행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벽보를 달았는가?

c.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대로부터 인가서를 받았는가?

d. 언제든지 가연성 물질로부터 35 피트 이내에서 용접활동을 할 때는 화재 감시 절차를 잘 이행하는가?

e. 화재감시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절단 또는 용접작업을 마친 후 30 분간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소화하는 작업을 감시하는가?

f. 용접 작업의 환경이 인화성 액체와 기체로부터 안전한가?

g. 용접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소화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준비가 되어 있는가?

5. 설치된 장비:

a. 아세틸렌 실린더가 연결되었을 때는 각각 통 사이에 그리고 연결기 마디에 인가된 불꽃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b. 산소가 연료가스 장치로 또는 연료가 산소장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c. 화염재발 보호장치는 공인된 것인가?

d. 역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절장치는 공인된 것인가? 또한 조절장치의 압력이 역류방지 장치와 화염재발장치의 압력보다 낮은가?

예 아니오

e. 설치된 장치의 접근 용이한 지점에 주요 폐쇄밸브를 마련하고 분명한 표식을 하였는가?

6. 개인보호장비:

a. 체온의 발산을 저해하는 개인보호 복을 착용한 작업자에게는 휴식을 자주 시키는가?

b. 피부화상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의복을 준비하였는가?

c. 모든 겉옷은 오일과 그리스로부터 착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

d. 앞 주머니와 걸어올린 소매 또는 소매부리는 금지되어 있는가?

e. 격리된 내피는 방염처리된 각반을 사용하거나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다리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가?

f.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튼튼한 가죽 또는 적절한 재료로 만든 방열 앞치마를 사용 신체의 앞부분을 보호하도록 하는가?

g.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방화각반이나 또는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다리를 추가 보호 하는가?

h. 머리 위의 용접, 절단 및 기타 작업 중 필요시 토시 또는 어깨 덮개를 사용하는가?

i. 위험수준의 소음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화 귀마개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기구를 사용하는가?

j. 필요시 머리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헬멧 속에 방화모를 착용하는가?

k. 공기가 집중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위험한 환경속에서 작업할 시 공인된 호흡장비만을 사용하는가?

l. 모든 용접용 헬멧은 29 CFR 1910.252 또는 이와 동등한 한국 안전 표준의 요구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가?

m.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용접공이 다른 작업자의 아크에 노출될 때는 필터렌즈가 달린 보안경을 용접공의 헬멧 아래에 착용하여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보호 받는가?

n. 가스 용접이나 산소절단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이나 기타 눈의 보호에 알맞은 기구를 사용하는가?

예 아니요

p. 작업자는 아크 광선 에너지로부터 헬멧으로 안면, 목, 그리고 양 귀를 보호하는 교육이 되어 있는가?

q. 보안경은 렌즈에 서리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 되는 것만을 사용하는가?

r. 안면과 눈을 보호하기 위한 손잡이 방패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7. 통풍의 필요와 가스유출:

a. 잠재적으로 유독성물질이나 유독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용접, 절단, 낫뿔작업을 할 때 소방대의 안내를 받는가?

b. 용접공은 연결부의 조립 후와 토치에 불을 당기기 전에 연결 부위를 점검하는가?

8. 전기 안전:

a. 전극 봉을 교체하기 전에 항상 용접기의 전류 공급을 차단하는가?

b. 용접공들은 절대로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끼고 전극 봉을 교체하면 안된다는 교육이 되어 있는가?

9. 항공기 용접:

a. 항공기의 용접은 가능한 격납고 밖에서 작업하는가?

b. 용접공 감독관은 선임 비행장 감독관에게 계획된 용접작업에 대하여 철저한 설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가?

c.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항공기든 항공기의 연료탱크와 엔진연료 통풍구가 용접 작업장 50 피트 이내에 있는가?

d. 용접공을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밧줄을 치거나 장애물로 용접작업을 격리하는가?

e. 화재감시원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면 용접 작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가?

f. 격납고 내에서의 항공기 용접 작업 수행은 미 화재방재청 표준 410, 항공기 정비에 관한 표준 요건을 따르는가?

10. 연료탱크, 실린더 및 용기의 용접과 절단:

예 아니오

a. 탱크, 실린더 및 용기를 절단, 용접할 때나 그 외의 가열작업을 할 때
말끔히 씻어내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가?

b. 새로운 용기를 절단이나 용접을 하기 전에 말끔히 씻어내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다른 가열작업과정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11. 차량 정비소:

a. 차량 정비 활동으로 실시하는 모든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소방대의
인가를 받고 하는가?

b. 정비소의 감독은 가 용접이나 절단 작업에 건전지 또는 연료탱크의 해체
및/또는 화학작용방지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가?

12. 휴대용 가스 기기:

a. 압력가스 통에는 감압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b. 산소 실린더와 부속품은 항상 그리스와 오일이 묻지 않도록
보관하는가?

13. 휴대용 전기 기기:

a. 회로를 실험하기 전에 전원을 제거하였는가?

b. 전선줄과 전극봉잡이는 매번 사용하기 전에 검열하는가?

c.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금속장치를 작업물체에 단단하게 부착하였는가?

d. 절연체가 손상되었거나 전도체가 노출된 전선은 교체되었는가?

e. 전극봉잡이를 사용치 않고 둘 때 사람, 전도체, 연료 및 압력 가스 통과
접촉할 수 없도록 잘 보관하는가?

예	아니 오
_____	_____

14.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용접:

a. 용접 감독관은 직업 건강 안전 협회 29 CFR 1910.146, 제한된 공간으로의 진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검토하였는가?

_____	_____
-------	-------

b. 제한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대에서 받은 육군 서식 5383-R, 열 작업 인가라는 인가서가 있는가?

_____	_____
-------	-------

c. 제한된 공간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실시할 때 유해설 물질의 축적이나 산소의 결핍을 막기 위하여 충분한 통풍이 되어 있는가?

_____	_____
-------	-------

d.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용 중장비의 바퀴에 받침목을 대어 안전하게 하였는가?

_____	_____
-------	-------

용어집

본 팜플렛에 정의된 용어는 본 팜플렛의 장에서의 사용에 국한하도록 의도되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은 사용된 맥락상 평상적 의미를 가진다. 웹스터 제 3 판 완본 대사전을 참조하라.

1 절 약어

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미 육군 및 공군 매점)
AR	Army Regulation (육군 규정)
DA	Department of the Army (육군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성)
DODM	Department of Defense Manual (국방성 교본)
DPW	Director of Public Works (시설 관리대)
FM	Factory Mutual (공장 상호 부조)
FM	Field Manual (야전교범)
IAW	In Accordance With (에 의거하여)
IMCOM	Installation Management Command (시설관리본부)
IMCOM-K	Installation Management Command – Korea (한국시설관리본부)
MACOM	Major Command (주요 육군 사령부)
Mil-HDBK	Military Handbook (군 편람)
NAF	Non-Appropriated Funds (비예산 자금)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 화재방재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POL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유류)
R&U	Repair and Utilities (수리 및 영선)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예규, 내규)
TB	Technical Bulletin (기술회보)

TM Technical Manual (기술교본)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보증 연구소)

2 절 정의

9-1-1 센터: 모든 긴급 및 비긴급 연락을 수신하며, 화재 긴급 채널의 라디오 혼잡을 조정한다.

화재 경비: 소방부서에 긴급상황이나, 화재 예방 필요 상황, 작은 불 소화 상황 혹은 공중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되거나, 생명안전위험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 보고할 목적으로 지정된 인원.

열 작업: 열 작업은 화씨 400 도 이상의 열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이는 용접, 화염 절단, 및 개방 화염 장비의 사용 그리고 타르탄광 작전을 포함한다. 그 외에, 분쇄, 연마 폭파, 드릴 등 불꽃의 가능성이 있는 차가운 작업도 뜨거운 작업으로 간주된다.

할 수도 있다: 상세 요건에 대응하는 임의 사용이나 대안 방안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해야 한다: 의무 요건을 지칭한다.